

2023년 IFRS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2021.12.)



동 자료에 수록된 각종 통계자료, 조사결과 등은 내부 업무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수집된 자료의 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동 자료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동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인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IFRS 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2021년 12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동 책자는 IFRS 17(보험계약) 시행으로 변화되는 법규의 개정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준서 시행 전 회사의 사전공시의무 등을 안내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21.9월 현재시점에서의 법규개정 방향(「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결과 중심)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최종 법규개정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Contents

I . 새로 시행되는 회계기준	5
1. IFRS 17(보험계약)	5
가. IASB의 IFRS 17(Insurance contracts) 제정경과	5
나. 한국의 K-IFRS 제1117호 제정경과	8
다. IFRS 17로 변화되는 내용	12
2. IFRS 9(금융상품)	14
가. 新 금융상품기준서 제정 및 시행경과	14
나. IFRS 9으로 변화되는 내용	15
II . 보험감독회계 개요 및 그간의 준비경과	23
1. 보험감독회계의 개요	23
가. 감독회계의 정의	23
나. 새로운 감독회계의 필요성	23
다. 보험감독회계 운영원칙	23
2. 그 간 감독당국의 준비 경과	24
가. IFRS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17.3월)	24
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25
다. 주요 논의경과	26
III. 주요 법규개정 방안	28
1.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	28
가. 재무제표 표시체계	28
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29
다. 중간재무보고	31

라. 특별계정 보험부채의 평가 및 표시	34
마. 특별계정의 설정·운영 관련 근거법령	35
바. 보험료 및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기준	36
사. 사업비 관련 회계처리	37
아. 재보험계약 위험전가기준	38
자. 재보험자산 손상처리기준	39
2. 책임준비금 구성 및 산출기준	40
가. 책임준비금의 구성	40
나.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41
3. IFRS 17 도입시 전환회계	52
가. 전환일의 보유계약 평가방법	52
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평가	54
4. 회사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중인 사항	56

IV. 사전공시 내용 **58**

1. 사전공시의 개요	58
2. IFRS 17 사전공시 모범사례	59
가. 주요 회계정책 변경	59
나. 도입 준비상황	60
다.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61
3. IFRS 9 사전공시 모범사례	69

V. FAQ **78**

부록. 과거 공개협약안	88
--------------	----



새로 시행되는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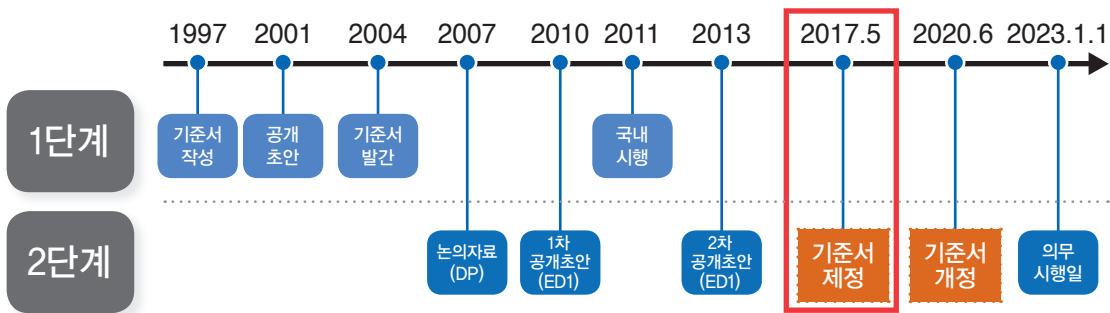
1. IFRS 17(보험계약)
2. IFRS 9(금융상품)

새로 시행되는 회계기준

1 IFRS 17(보험계약)

가. IASB의 IFRS 17(Insurance contracts) 제정경과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17 제정배경〉



□ 보험계약은 각국의 역사와 관습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국가 별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이 상이

□ 이에,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가 간 보험회계의 통일을 위해 '97년 기준서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 20여년의 준비과정*(2단계 진행)을 거쳐 '17년 5월 최종 기준서를 확정

* 1,400회의 회의개최, 720개의 의견 등을 반영

- (1단계) '04년 임시적 기준서인 IFRS 4(보험계약)를 제정하였으며, 동 기준서는 국가별 다양한 회계실무를 허용

- (2단계) '17.5월, 최종 기준서인 IFRS 17을 제정(시행일 '21.1.1)
'20.6월, 기준서를 개정하여 시행일을 '23.1.1로 연기*

* IFRS 17이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계기준으로 동 기준서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IFRS 기준서 체계〉

□ '21.9월말 기준 국제회계기준에는 총 41개의 기준서*가 있으며, '23.1.1부터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인 IFRS 4는 IFRS 17로 대체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FRS로, IASB가 설립되기 이전의 국제회계 기준 제정기구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AS로 명칭

기준서	주제	기준서	주제	기준서	주제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IFRS 2	주식기준 보상	IFRS 16	리스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FRS 3	사업결합	(IFRS 17)	보험계약	IAS 27	별도재무제표
IFRS 4	보험계약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AS 2	재고자산	IAS 29	초안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AS 7	현금흐름표	IAS 32	금융상품 : 표시
IFRS 7	금융상품 : 공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3	주당이익
IFRS 8	영업부문	IAS 10	보고기간 후 사건	IAS 34	중간재무보고
IFRS 9	금융상품	IAS 12	법인세	IAS 36	자산손상
IFRS 10	연결재무제표	IAS 16	유형자산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FRS 11	공동약정	IAS 19	종업원 급여	IAS 38	무형자산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IFRS 13	공정가치 측정	IAS 21	환율변동효과	IAS 40	투자부동산
IFRS 14	규제이연계정	IAS 23	차입원가	IAS 41	농림어업

〈IFRS 17 기준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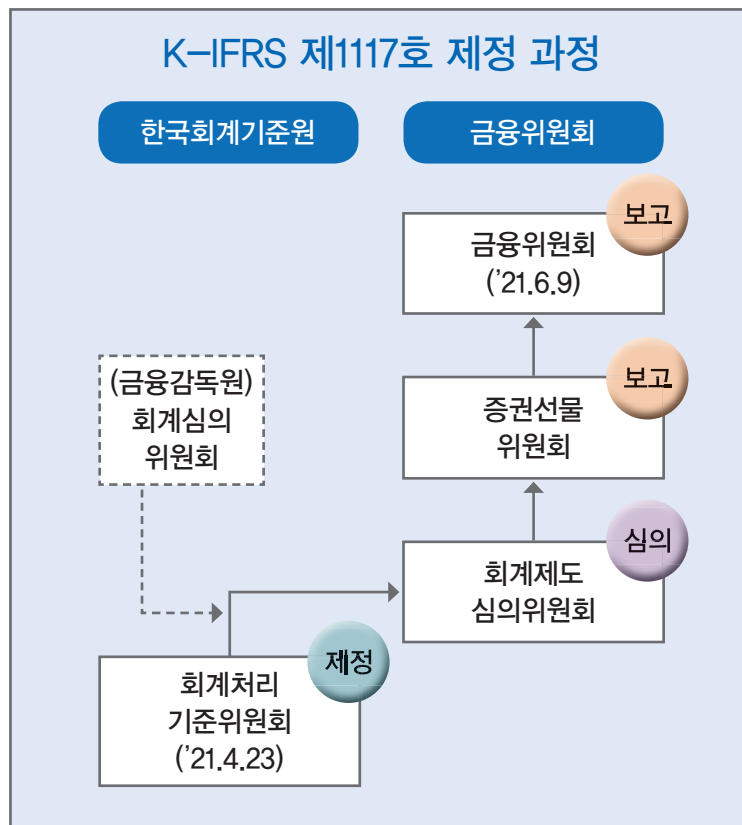
목 차	
IFRS 17 ‘보험계약’	
목적	
적용	
적용범위	
보험계약의 결합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인식	
보험취득 현금흐름	
측정	
최초 인식 시 측정	
후속 측정	
손실부담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출재보험계약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계약변경 및 제거	
보험계약의 변경	
제거	
재무상태표 표시	
재무성과표: 인식 및 표시	
보험서비스 결과	
보험금융수익(비용)	
공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사례 · 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IFRS 17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적용사례 · 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

나. 한국의 K-IFRS 제1117호 제정경과

-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Insurance Contracts)은 K-IFRS 제1117호(보험계약)로 제정·공표('21.6.10)되어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21.4.23. K-IFRS 제1117호**를 제정 의결한 후,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21.6.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공표
 - * 외부감사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해석 및 관련 질의회신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수행
 - ** (국제회계기준) IFRS 4 → IFRS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04호 → K-IFRS 제1117호
- 우리나라는 IFRS 전면 도입국가로서, IFRS 17 시행시기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23.1.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IFRS 17 적용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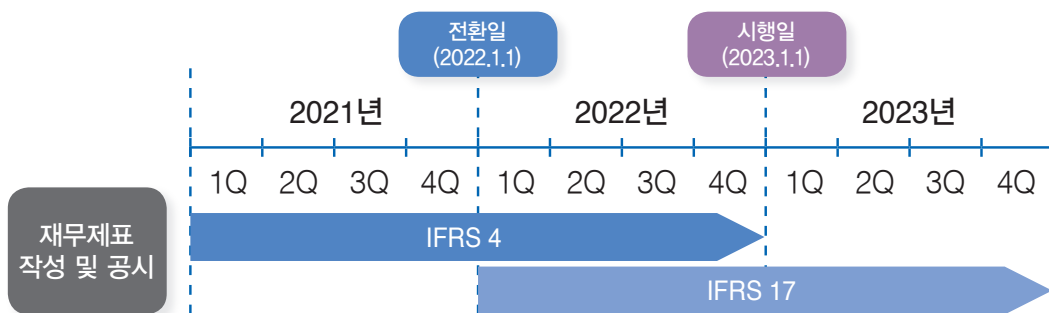
- 모든 보험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IFRS 17을 의무적용하며, 이에 '23년 이후에는 IFRS 17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
- 최초적용일(date of initial application) : 기업이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로 2023.1.1.에 해당
- 전환일(transition date) :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으로 2022.1.1.에 해당

【보험회사의 IFRS 17 의무적용 관련 근거법령】

- 외부감사법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IFRS 17 비교 정보〉

- IFRS 17은 최초 적용시점 직전 기간에 대하여 IFRS 17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
- 이에 보험회사는 '23년 재무제표 작성시 '22년 재무제표를 IFRS 17에 따라 재작성하여 비교표시할 의무



【비교표시 정보제공 관련 IFRS 17 취지 - 결론도출근거】

- (BC387) IFRS 17은 IFRS 17의 최초 적용시점 직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들을 비교하고 추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면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해당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 (BC388) IASB는 과거의 다양한 회계처리와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한 보고기간에 대해서라도 재작성된 비교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IFRS 17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전환 시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비교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처음 IFRS 17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ASB는 한 보고 기간에 대해 비교 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IFRS 17의 시행일을 정하였다.

〈참고〉 글로벌 IFRS 17 채택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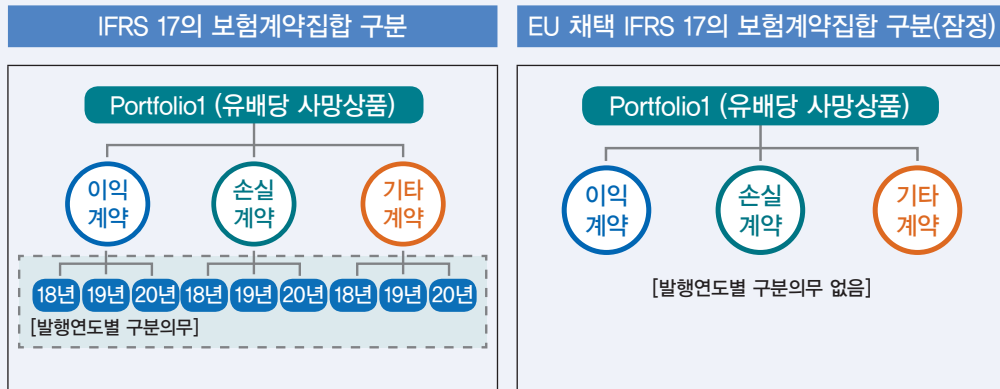
-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은 IFRS 17을 자국 회계기준으로 제정·공표
- EU에서는 IFRS 17의 일부 내용(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의 발행연도별 구분의무’를 선택적용 사항으로 변경)을 수정**(carve-out)하여 채택할 계획(’27년까지 한시 적용)

* ① 직접참가특성 및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집합으로서, 다른 보험계약자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 또는 ② 계약집합이 여러 해에 걸쳐 있고 매칭조정을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 IASB가 제정한 IFRS 기준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채택

- EU는 IASB에 지속적으로 IFRS 17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IASB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서의 수정을 결정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자국의 상품 특성상 ‘발행연도별 구분의무’가 불필요하다며 동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IASB는 동 구분의무가 IFRS 17의 핵심적 사항이고 연도별 수익성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며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



- IFRS 17을 의무도입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도 자국회계기준의 개정 등을 통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도입을 준비 중

- 미국 : US-GAAP 적용,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US-GAAP 개정안 '23년 시행
- 중국 : 중국회계기준 적용, IFRS 17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23~'26년 시행 예정
- 일본 : IFRS 선택적용, 대형 상장 보험사 등이 IFRS 17을 '23년부터 시행 예정

다. IFRS 17로 변화되는 내용

* '21.6.10. 보도자료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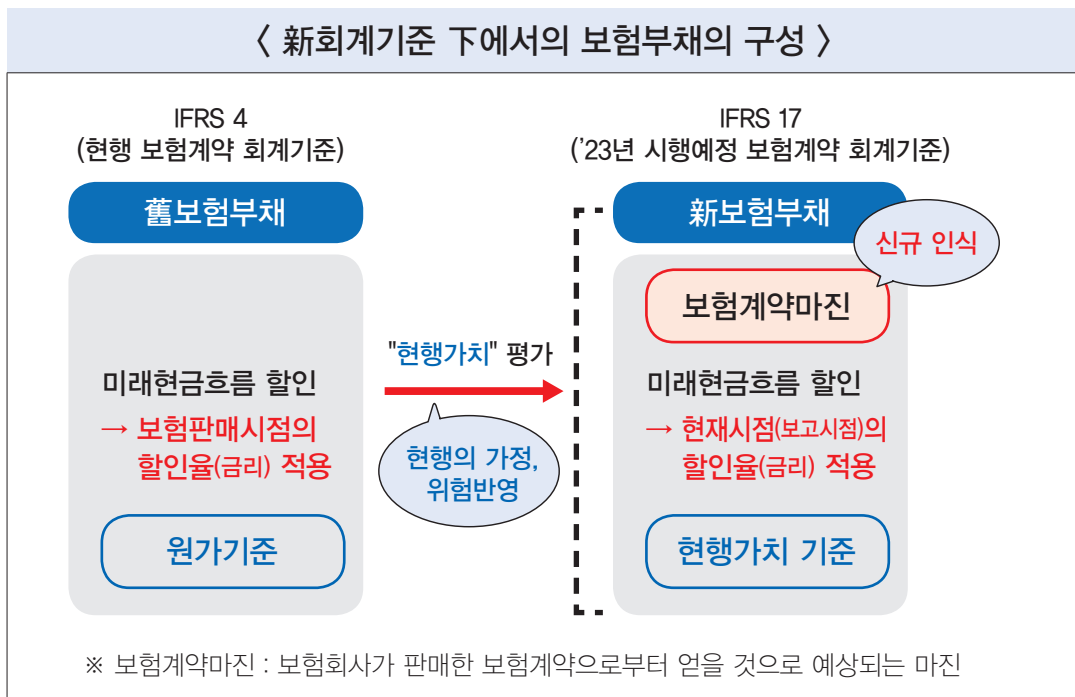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 (주요 내용)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

□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 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주요 내용)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

○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 가능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IFRS 4 (현행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 17 (‘23년 시행예정 보험계약 회계기준)	
금액						금액	
영업수익 (현금주의)	XXX	보험수익	→	보험수익	→	보험수익 (발생주의)	XXX
(수취한) 보험료수익	X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등	XXX
투자수익 등	XXX	非보험수익	→	非보험수익	→	보험영업비용	XXX
영업수익	XXX					실제보험금/사업비	XXX
지급보험금 등	XXX					보험서비스결과	XXX
영업이익	XXX					투자손익	XXX
영업외손익	XXX					투자수익	XXX
당기손익	XXX					투자비용	XXX
						당기손익	XXX

2 IFRS 9 (금융상품)

가. 新 금융상품기준서 제정 및 시행경과

〈IASB의 IFRS 9 제정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발생손실*)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켰다는 문제 제기

* 원리금 연체 등 손상 사건의 발생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인식(손상 발생 이전 총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손상 발생시 총당금이 급격히 증가)

⇒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새로운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 9)을 제정('14.7월)하고, '18.1월부터 시행

〈한국의 K-IFRS 제1109호 시행경과〉

- 국제회계기준인 IFRS 9(Financial Instruments)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으로 제정·공표('16.2.5)되어 '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

* (국제회계기준) IAS 39 → IFRS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39호 → K-IFRS 제1109호

- 보험회사의 경우 IFRS 17 시행('23년) 전에 IFRS 9을 먼저 적용할 경우 회계 불일치와 손익 변동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

→ 보험회사*에 한해 IFRS 9의 시행을 IFRS 17의 시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허용

* 보험사업부채가 총 부채의 90%를 초과하거나 보험사업부채가 총 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이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연기선택권을 적용하여 IFRS 9을 '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연결그룹에 소속된 일부 보험회사 등은 '18년부터 IFRS 9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중

나. IFRS 9으로 변화되는 내용

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기존) 금융자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발생손실 모형(incurred loss)

* 원리금 상환 불이행 등 계약위반, 차입자의 파산 등

- (변경) 발생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 모형(expected credit loss)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K-IFRS 제1109호의 단계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준]

단 계	신용위험 증가 정도	손상금액
Stage ①	신용위험 유지 ('투자등급' 유지 포함)	12개월 기대신용손실
Stage ②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3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Stage ③	손상 발생 (90일 초과 연체 등)	

2.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 (기존)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
- (변경)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

*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지 여부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 ③ 매매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전·후 비교]

기존(K-IFRS 제1039호)		변경(K-IFRS 제1109호)
분류	측정기준	분류 = 측정기준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④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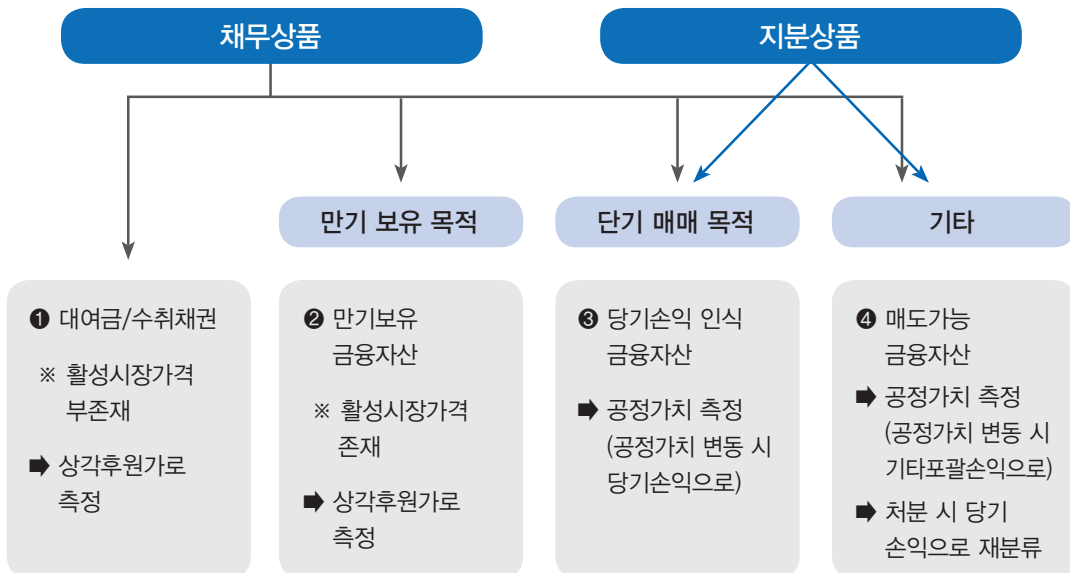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고(이하 'SPPI 요건 충족'),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가 목적인 채무상품

** SPPI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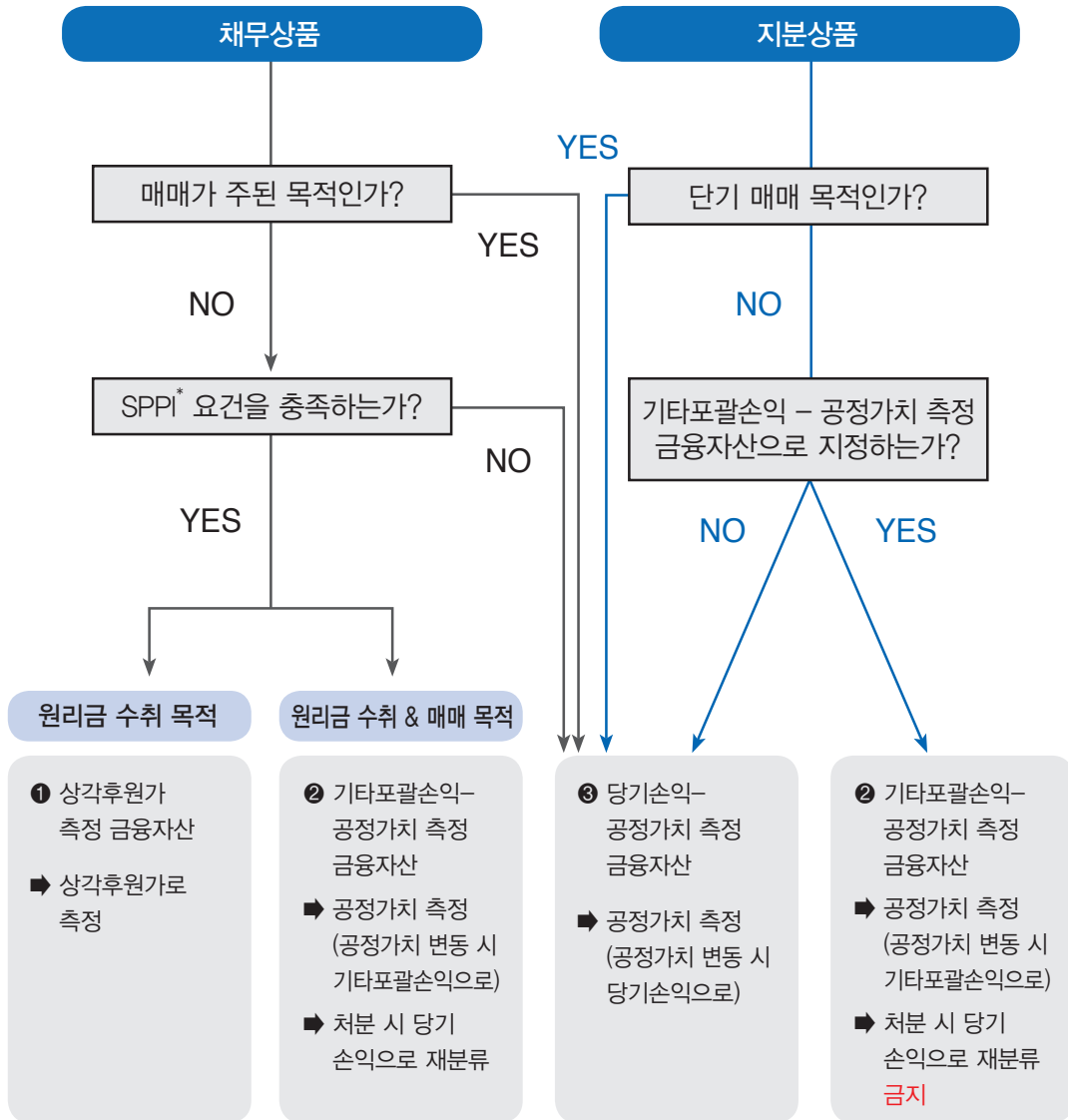
*** ㉠SPPI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모형이 매매 목적인 채무상품, ㉡SPPI 요건을 미충족하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분류·측정 관련 회계기준 비교 도표]

□ 종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신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 SPPI(Contractual cash flows that are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 기본적인 금전대여의 성격

〈참고〉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

* '18.6.29. 금감원 보도자료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 발췌

- ▶ 新기준서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 (14.7~33.8%, '17년말 기준)하여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음
 -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 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3.1~19.0%p)하여 손익변동성 확대 예상
- ▶ 회계정보가 최근의 시장 상황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 더 유용해졌으나, 추정의 개입 여지가 많아져 이러한 부분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

가. 분석대상

- 총 45개 금융회사의 '17년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
 - 은행 12개사, 증권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지주 8개사
 - * 대부분의 보험사는 新보험계약기준서(IFRS17)가 적용되는 '23년부터 K-IFRS 제1109호를 적용할 예정이나, 일부 보험사는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을 위해 '18년부터 적용

나. 종합분석

- 기준서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新기준서의 영향은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다름
 - 즉,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
-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회계상 자본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시장우려와 달리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

* '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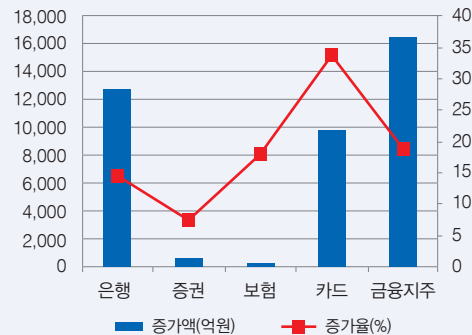
□ (권역별 영향) 은행 및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각각 87.0%와 96.6%를 차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각각 12,712억원 (14.7%), 9,803억원(33.8%) 증가

* 은행 : 신한(3,838억원 ↑), 우리(3,066억원 ↑), KB(2,672억원 ↑), 하나(1,000억원 ↑) 順
카드사 : KB국민(2,300억원 ↑), 신한(2,151억원 ↑), 삼성(1,757억원 ↑) 현대(1,119억원 ↑) 順

- 금융지주사도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어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77.6%로 높아, 대손충당금이 16,504억원(18.9%) 증가
- 이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금융권역별 대손충당금 증가액 및 증가율 ('17년말 기준)

구분	대손충당금(억원)			증가율 (%)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은행	86,608	99,320	12,712	14.7
증권	6,887	7,405	518	7.5
보험	1,339	1,584	245	18.3
카드	29,030	38,833	9,803	33.8
금융지주	87,125	103,629	16,504	18.9



[주요 은행 · 카드사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17년말 기준)]

구분	회사명	대손충당금(억원)			증가율(%)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은행	신한	16,755	20,593	3,838	22.9
	우리	20,796	23,862	3,066	14.7
	KB	16,611	19,283	2,672	16.1
	하나	15,177	16,177	1,000	6.6
카드	KB국민	5,481	7,781	2,300	42.0
	신한	7,340	9,491	2,151	29.3
	삼성	5,325	7,082	1,757	33.0
	현대	3,535	4,654	1,119	31.6

- (주요 원인) 부도확률론에 기초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집합평가의 경우, 미래전망정보 반영 및 신용손실 예상기간 확대 등으로 적용 부도확률이 증가하여 총당금 증가

*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 손실률(Loss Given Default) ×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

- 일부 금융회사는 담보평가 등 개별적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개별평가 대상을 확대한 것도 총당금 증가 원인으로 작용

라.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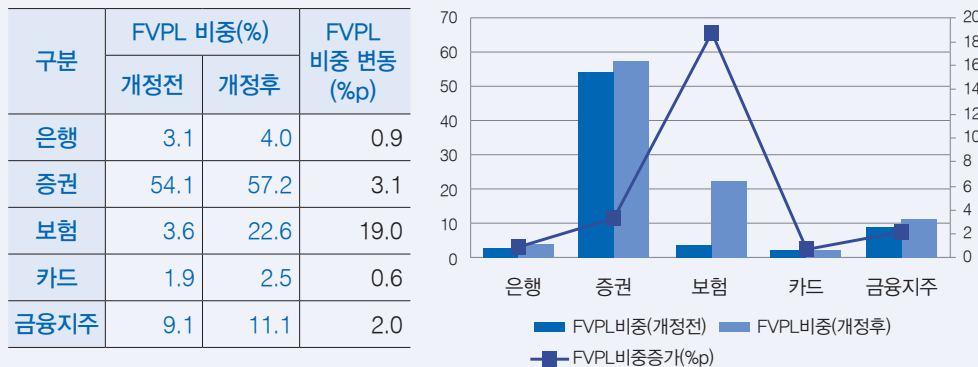
- (권역별 영향)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19%p)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권사가 3.1%p 증가하였으며, 은행, 카드사 등도 미미하게 증가

* 보험사 : KB손보(50,937억원 ↑), 신한생보(40,222억원 ↑), 롯데손보(19,894억원 ↑), KB생보(14,990억원 ↑) 順

증권사 : 미래에셋(32,895억원 ↑), 삼성(15,753억원 ↑), NH(12,332억원 ↑), 한투(8,749억원 ↑) 順

** 보험사의 경우 '23년 新보험계약기준서(IFRS17) 적용 전까지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른 손익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7개 보험사가 모두 이를 적용

금융권역별 당기손익금융자산(FVPL) 비중 및 변동 ('17년말 기준)



[주요 보험사 · 증권사 당기손익금융자산 분류 변동 현황('17년말 기준)]

구분	회사명	당기손익금융자산(억원)			비중변동(%p)
		개정전	개정후	증가액	
보험	KB손보	8,544	59,481	50,937	20.5
	신한생보	4,894	45,116	40,222	15.9
	롯데손보	436	20,330	19,894	31.8
	KB생보	3,373	18,363	14,990	18.9
카드	미래에셋	302,675	335,570	32,895	3.8
	삼성	196,649	212,402	15,753	4.3
	NH	262,067	274,399	12,332	2.8
	한투	244,277	253,026	8,749	2.4

□ (주요 원인)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 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 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

*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수익 · 비용 중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항목)에 반영

○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되고,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은 파생요소로 인해 원금과 이자 외의 현금흐름이 발생



보험감독회계 개요 및 그간의 준비경과

1. 보험감독회계의 개요
2. 그 간 감독당국의 준비 경과

보험감독회계 개요 및 그간의 준비경과

1 보험감독회계의 개요

가. 감독회계의 정의

- 감독회계는 재무건전성 유지,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 기준(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으로,
 -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며 감독당국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

【일반회계, 건전성회계 개요】

- 일반회계 : 주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목적의 재무제표 작성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으로 외부감사법에 근거
- 건전성회계 : 지급여력비를 산출에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한 자산·부채평가기준(Prudential Accounting Principle)으로 보험업법에 근거

나. 새로운 감독회계의 필요성

- 현행 감독회계는 일반회계(IFRS 4) 인정범위내에서 건전성 확보,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
 - 한편 IFRS 4는 각국 회계관행을 인정하였으나 IFRS 17('23년 시행)에서는 각국의 회계관행을 불인정
 - ⇒ IFRS 17 원칙 범위 내에서 감독회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
 - ※ 국제적으로도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이 자산·부채 시가평가기반의 보험회계를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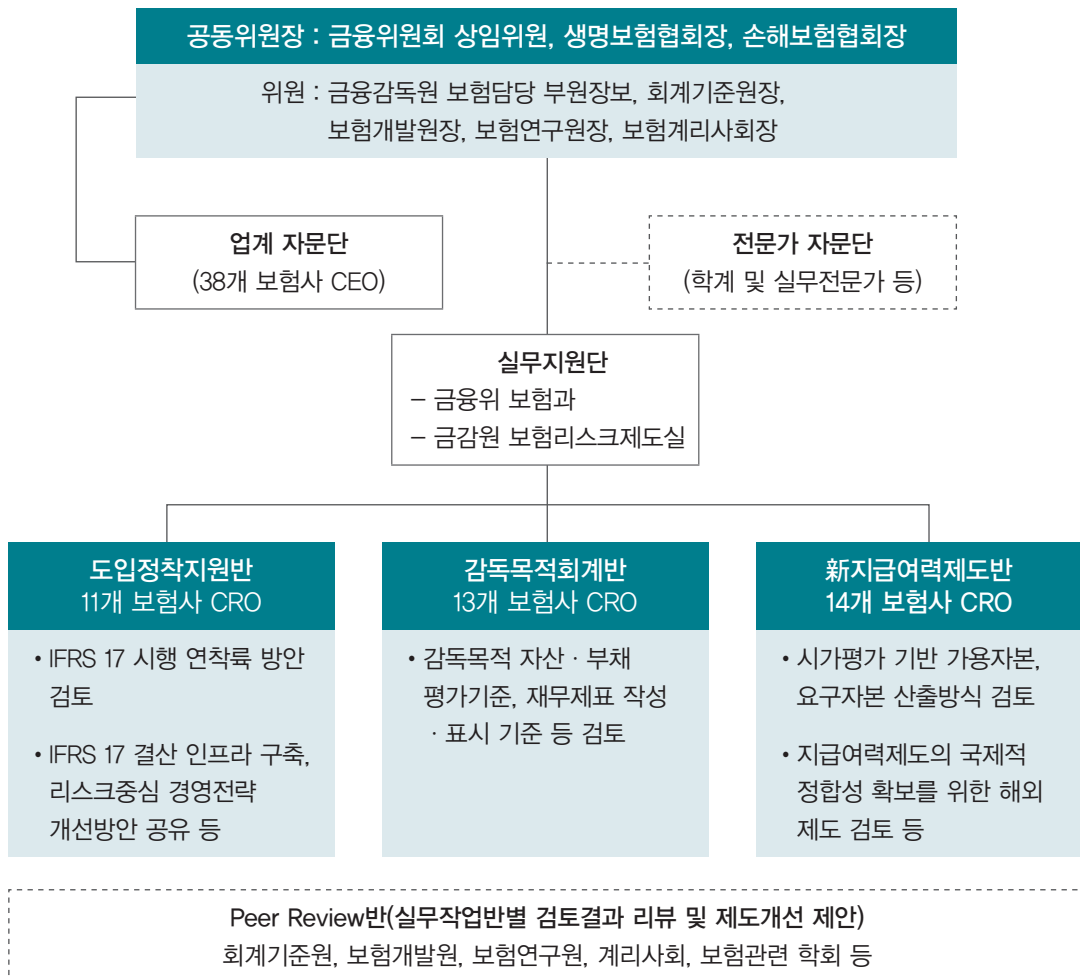
다. 보험감독회계 운영원칙

- IFRS 전면도입국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비용(회사부담) 대비 효익(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조화를 추구
 - ① 보험회계 운영의 국제적 추세와 일관성 확보
 - ②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목적 달성
 - ③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목적 달성
 - ④ 국내 보험회사의 실무적용 효율성 제고

2 그 간 감독당국의 준비 경과

가. IFRS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17.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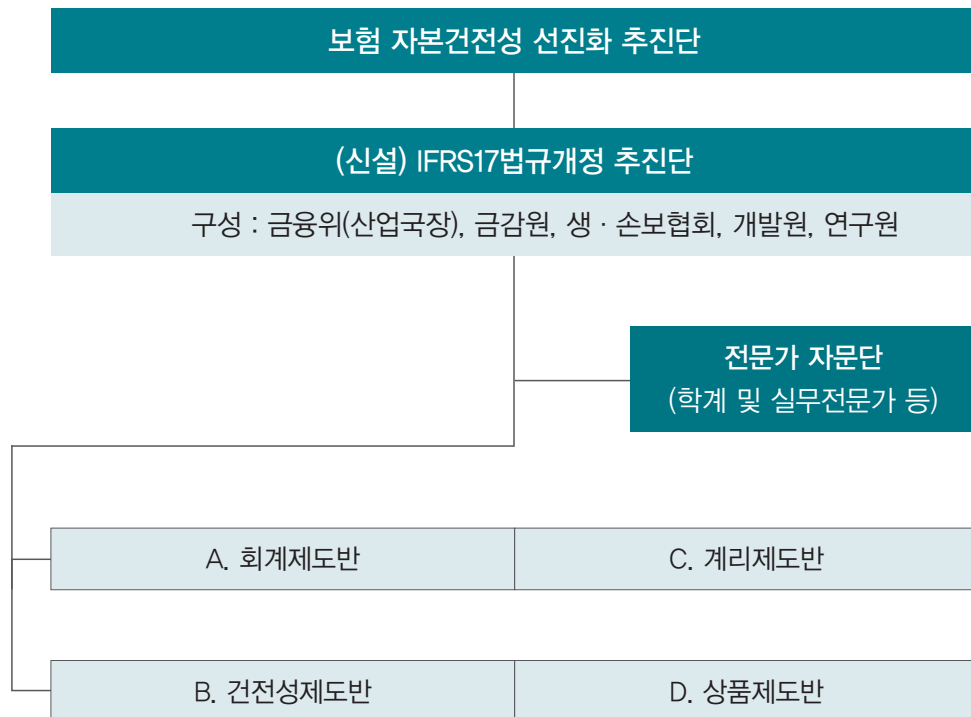
- '17.3월 IFRS 17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감독제도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



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 '18.11.27일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
 - 동 추진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으로 구성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
 -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다. 주요 논의경과

□ '17.12월 도입준비위 개최 (☞ '17.10월 공개협의안 p89)

- 보험계약 분류기준
- 계리적 가정 (위험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산출기준
- 계약자지분조정 처리기준
-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및 재보험자산 손상·평가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평가기준

□ '18.4월 도입준비위 개최 ('18.2월 공개협의안 p99, '19.2월 공개협의안 p104)

- 보험계약마진 측정
- 사업비 배분기준
- 위험조정
- 특별계정
- 임의배당요소 측정기준
- 보험계약대출 평가

□ '21.9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개최

- 회계 계정과목 체계 정비
-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정비
- 전환일 시점의 보유계약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주요 법규개정 방안

1.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
2. 책임준비금 구성 및 산출기준
3. IFRS 17 도입시 전환회계
4. 회사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중인 사항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21.9월 현재시점에서의 법규개정 방안(「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결과 중심)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최종 법규개정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법규개정 방안

1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

가. 재무제표 표시체계 (※ 규정개정사항)

현행 (IFRS 4)

- 생보사와 손보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규정 §6-9, §6-16), 그 결과 업권 간 손익계산서 구성항목 등이 상이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업권 구분 없이 하나의 재무제표 표시체계를 규정
- IFRS 17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구성항목을 변경
 - 재무상태표 자본항목에 ‘신종자본증권’ 등을 추가하고,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으로 구분
 - 생보사와 손보사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 마련

〈 ‘재무제표 표시체계’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생·손보 동일)
	생보사	손보사	
재무상태표	[자산] 운용/비운용자산, 특별계정자산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산] 운용/비운용자산, 특별계정자산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산] 좌동 [부채]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계약자지분조정,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계산서	영업손익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특별계정손익	보험영업손익 -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 - 보험환급금 등 투자영업손익 특별계정손익	영업손익 - 보험손익 예상발생보험금 예상발생사업비 - 투자손익 :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6-9, 6-16

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 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현행 시행세칙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은 IFRS 4를 전제로 되어 있으므로, IFRS 17 기준에 부합하게 계정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내용에 부합하도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
 - (자산) IFRS 9, IFRS 17 내용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계정과목 체계 등을 변경* 하고, 현금주의 관련 계정과목을 삭제**
 - * 유가증권을 IFRS 9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등 3개 범주로 구분
 - ** 보험미수금, 구상채권 등 현금주의 기반 계정과목을 삭제하고,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등 IFRS 17을 적용한 보험계약 평가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신설
 - (부채) IFRS 17 보험부채 체계에 맞게 책임준비금 하위계정을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으로 전면 개편
 - (손익) 현금주의 계정과목을 삭제하는 한편, IFRS 17에 따른 발생주의 손익인식이 가능하도록 보험손익 관련 계정과목*을 신설
 - * 예상발생보험금, 예상사업비(손해조사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위험조정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등 주요 수익 원천별 계정 신설
 - 투자손익(보험계약자산·부채의 시간가치, 금융위험 변동 인식) 관련 보험금융 수익·비용 계정*을 마련
 - * 이자, 환율변동, 할인율변동 등 발생 요소별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계정과목을 세분화
 - IFRS 17 도입으로 미상각신계약비 계정과목 등이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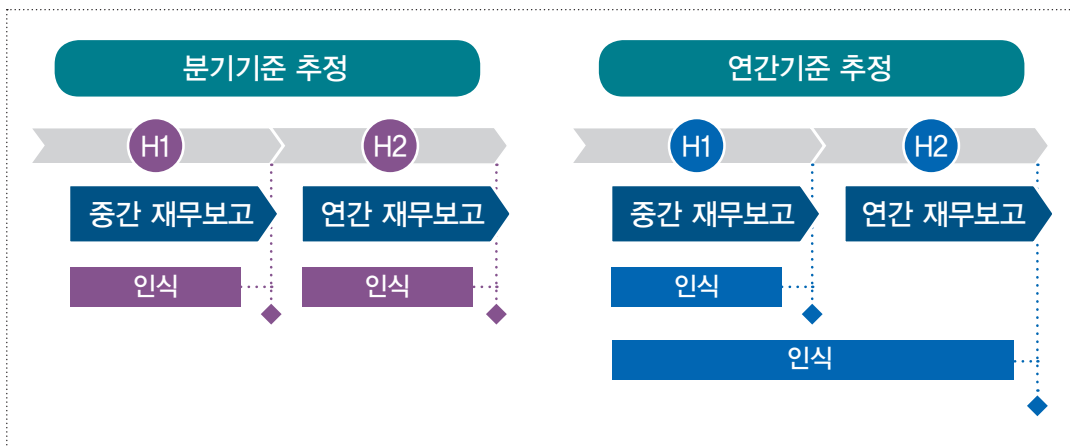
다. 중간재무보고 (※ 협회공시규정 개정사항)

현행 (IFRS 4)

- 후속 중간/연차 보고서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적용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후속 중간/연차 보고서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적용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아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적용
 - ①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처리한 회계추정을 변경하지 않음(분기기준 추정)
 - ②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처리한 회계추정을 변경함(연간기준 추정)



- 회사가 추정 관련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용가능
 - IFRS 17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사가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추정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분기기준 추정’ 적용을 희망하는 비상장보험회사 등이 분기별 경영공시에서 전체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공시규정 개정

*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경영공시는 IAS34 중간재무제표 요건 충족,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요건 미충족,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19.10월), 33페이지 참고

〈참고〉 중간재무제표 관련 IFRS 17 개정내용 및 취지

□ '20.5월 이전 IFRS 17 내용

- IFRS 17 B137에서는 후속적인 중간보고 및 연차보고시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회계추정 처리의 변경을 금지*(분기기준 추정)

* IAS34(중간재무보고) 형식에 맞는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

□ '20.6월 IFRS 17 개정내용 및 취지 ('20.1월 IASB 회의내용 요약)

- 종전 B137 조항은 회사의 이중결산 부담*을 야기하고, IAS34(중간재무보고)에 따른 회계추정 처리 관행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IAS34에 의한 중간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B137에 의해 동 중간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 (일부 기업은 회사의 분기 이중결산 부담이 CSM을 재산출하는 부담보다 더 크다고 주장)

- IASB는 동 개정으로 인한 효익(회사 실무편의성 제고)이 관련 비용(이중결산시스템 운영 등)을 초과하고,

- 회사 간에 다른 추정 회계처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손실이나 비교가능성 훼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후속적인 중간보고 및 연차보고시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회계추정 처리를 변경할지 여부를 회사가 회계정책으로 선택

〈 '회계추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전 ('20.5월 이전)	개정 내용 ('20.6월 개정)
B137.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K-IFRS 제1034호의 요구사항에 불구하고, 후속적인 중간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은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 추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B137. K-IFRS 제1034호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 보고기간에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참고> 중간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내용('19.10월)

회계기준원 해석 : 비상장보험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동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중간재무보고서를 외부 정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중간재무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해석 근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는 중간보고 대상기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재무보고 및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외부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는 외부 정보이용자가 재무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외부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가 필요한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서는 해당 기준 적용 대상인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4) 따라서 비상장보험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중간재무보고서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중간재무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이때, 중간재무보고서는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라. 특별계정 보험부채의 평가 및 표시(※규정·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특별계정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립보험료를 분리하여 특별계정 보험부채로 계상하고 구분표시 (규정 §6-23 등)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특별계정을 별도 구분하지 않음 (일반계정과 동일한 회계처리)
- 특별계정 보험부채 평가 및 표시체계를 IFRS 17에 맞게 정비
 - 특별계정의 부채평가는 현행 계약자적립금 체제를 유지하고, IFRS 17 보험부채와 계약자적립금 간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
 - 재무상태표에서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표시’하고 실적배당형은 ‘총액으로 한줄 표시’하는 한편,
 - 손익계산서에 특별계정의 수익·비용을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특별계정 표시’ 관련 주요 개정내용 〉

현행			개정안*		
구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일반계정과 합산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별도 표시	별도 표시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	(한줄, 총액)	해당없음 (계약자손익)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장기손보, 자산연계형보험			장기손보, 자산연계형보험		

* 퇴직연금, 퇴직보험 : 손익구조 등 상품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및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분류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6-23, 6-26
- (세칙) 4-13, 별지27, 별지28, 별지65(신설), 별지66(신설)

마. 특별계정의 설정·운영 관련 근거법령(※규정·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특별계정 설정·운영(규정 §5-6)의 근거 법령(소득세법, 근퇴법 등)이 과거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

* 보험업법의 경우 '20.12월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

법규 개정안 (IFRS 17)

- 그 간 소득세법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연금저축보험 근거법령 : 조특법 §86조의2 → 소득세법 §20조의3①2호*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로 변경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6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동법 제16조가 제29조로 조문 위치가 변경

- 퇴직보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2조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2조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기존의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이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으로 변경

〈 ‘특별계정 근거법령’ 관련 주요 개정내용 〉

현행	개정안
1. 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 조특법 §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생명보험 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1. 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 소득세법 §20조의3① 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 근퇴법 §16②에 따른 보험계약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 근퇴법 부칙 §2①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2.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 근퇴법 §29②에 따른 보험계약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 법률 제10967호 근퇴법 부칙 §2①에 따른 퇴직보험 계약
3.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 * 근퇴법 §16②에 따른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3.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 * 근퇴법 §29②에 따른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4.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 조특법 §86에 따른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4.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 법률 제11614호 조특법 부칙 §40에 따른 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5-6, 6-14

바. 보험료 및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기준 (※규정 개정사항)

현행 (IFRS 4)

- 보험료의 수익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되고, 구상채권은 회수가능가액을 자산으로 계상 후 수익인식하도록 규정*

* 보험료의 수익인식(규정 §6-2조의2) :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인식
 구상채권의 수익인식(규정§6-17조) :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의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보험료 수익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고, 구상채권은 회수가능액을 최선추정 산출을 위한 미래 현금흐름에 포함
- 현행 감독규정의 보험료, 구상채권 수익인식기준을 삭제하고 세칙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IFRS 17에 맞는 수익인식기준을 규정
 - 보험료 수익인식* : 현행 감독규정 제6-2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세칙에 보험 계약마진 등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신설
 - * 기본적으로 IFRS 17 시행 이후 보험료의 수익인식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
 - 구상채권 수익인식 : 현행 감독규정 제6-17조를 삭제하고, 시행세칙에 전반적인 미래현금흐름 산출기준을 마련

〈 ‘수익인식기준’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보험료	현금주의(규정§6-2조의2)	발생주의(IFRS 17 원용) 시행세칙에 CSM 수익인식기준 신설
구상채권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수익으로 인식(규정§6-17조)	부채의 현금흐름에 포함 시행세칙에 관련 미래현금흐름 산출기준 신설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6-2의2, 6-17
- (세칙) 별표35(신설)

사. 사업비 관련 회계처리(※ 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사업비는 보험계약 등에 직접 관련된 신계약비와 계약 유지 및 수금 등에 소요되는 유지비로 구분
 - 신계약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최대 7년)을 통해 비용화되며, 한도 초과 신계약비와 유지비는 발생한 해에 당기비용으로 인식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보험계약에 귀속 가능한 사업비*를 보험부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미제시
 - * 보험계약 귀속가능 직·간접비 :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포함, 귀속불가 간접비 : 당기비용
 -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CSM에서 조정하고,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
- (감독회계) 사업비 회계처리 관련 기본원칙만 제시
 -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업비 분류, 배분정책을 규정하지 않고, 회사의 사업비 정책에 맞게 IFRS 17을 적용*
 - * 보험사별 사업비 정책 다양성과 미래 사업비 구조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 ※ '18.4월 도입준비위에서 사업비 배분단위 순서를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유연한 회계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미제시하는 방안으로 변경
 - 회사가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관련된 경험조정 회계정책 등을 수립하여,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규정 (세칙 별표4)

※ 관련 조항

- (시행세칙) 별표4, 별표35(신설)

아. 재보험계약 위험전가기준(※ 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현행 규정) 손해보험의 경우 원보험은 부가급부금비율을, 재보험은 ‘재보험자 기대손실*’을 적용하여 보험위험 전가 여부를 판단(세칙 별표 28)

* 재보험자 손실의 기대값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대평균값(확률가중)을 사용하는 방법은 IFRS 17에 위배될 소지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재보험계약도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기준(부가급부금 비율)을 적용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전가여부를 판단

- (감독회계) 현행 시행세칙 별표28(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중 IFRS 17과 상충되는 양적기준은 삭제, 질적기준은 세칙본문으로 내용이관

-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를 판단하는 양적기준을 삭제하고,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시행세칙 별표 35(신설)의 위험전가 평가기준(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을 적용

- 질적기준(위험전가가 없는 계약 판단기준*)은 관련 세칙의 본문으로 이관

*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하는 등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등

〈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평가기준’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양적기준	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의 기준 (재보험자 기대손실) 제시	현행 양적기준을 폐지하고 원보험과 동일한 양적기준 적용
질적기준	위험전가가 없는 계약에 대한 질적 판단기준을 별도 제시	현행 질적기준을 세칙 본문으로 이관하여 운영

※ 관련 조항

- (시행세칙) 5-17조의2, 별표28

자. 재보험자산 손상처리기준(※ 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현행 규정) 재보험자산에 대해 손상사건*(발생손실모형 적용) 발생시 재보험자산 전액을 손상처리(규정 §7-13)

* 수재 보험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투자적격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기준서) 재보험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신용위험의 증가 등 미래 전망 정보 등을 토대)에 의해 손상금액을 인식
- (감독회계) 현행 감독규정상 재보험자산 손상평가 처리기준을 삭제하고, IFRS (기대손실모형) 내용에 따라 손상금액을 인식하도록 규정
- 현행 감독규정의 손상평가 처리기준을 삭제하고, IFRS를 원용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른 손상평가를 하도록 규정

※ 재보험자산의 구체적인 손상기준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규정함으로써 건전성 규제목적을 달성

〈 ‘재보험자산 손상’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모형	발생손실모형 (Incurred Loss Model)	기대신용손실모형 (Expected Credit Loss Model)
손상인식	손상사건이 발생한 때 (재무건전성 기준 미충족 등) 전액 손실처리	IFRS 기준서를 원용하여 평가 (미래전망 등을 토대로 기대손실 인식)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7-13

2 책임준비금 구성 및 산출기준

가. 책임준비금의 구성 (※규정·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책임준비금 구성항목은 現 회계기준(IFRS 4)을 전제로 구성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 내용과 부합하도록 책임준비금의 하위 계정과목을 변경
 - 책임준비금*의 구성항목을 보험·재보험·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부채 등은 별도로 구분표시**

* IFRS 17 시행 이후에도 책임준비금 용어는 그대로 사용

** '보험계약부채 이행현금흐름'에 계약자배당부채 현금흐름이 포함된 경우 정보성계정으로 별도 표시

〈 '책임준비금 구성 변경' 관련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개정안 (생·손보 동일)
생보사	손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재보험료적립금 • 보증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부채 (계약자배당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보장요소 - 발생사고요소 • 재보험계약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보장요소 - 발생사고요소 • 투자계약부채

※ 관련 조항

- (감독규정) 6-11, 6-11조의2, 6-11조의3, 6-18, 6-18조의3, 6-18조의4, 7-65
- (세칙) 4-3, 4-3조의2, 4-9, 4-9의2(신설), 4-10, 4-11, 4-12, 5-20,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25

나.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 세칙개정사항)

현행 (IFRS 4)

□ 현행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은 現 회계기준(IFRS 4)을 전제로 규정

*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 보험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 등 책임준비금 세부 구성항목별로 산출기준 규정

법규 개정안 (IFRS 17)

□ IFRS 17에 부합하는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마련(세칙 별표35 신설)

○ 보험계약 분류기준,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책임준비금 항목(최선 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별 세부 산출기준 등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화

〈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세칙 별표35) 주요 구성 〉

구분	주요 내용
1장 총칙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2장 보험계약 분류	분류기준, 평가시점, 평가단위
3장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원수보험, 재보험의 구분기준
4장 잔여보장요소 회계모형의 적용	회계모형 적용기준
5장 위험조정 산출기준	위험조정 산출 및 배분기준
6장 보험계약마진 수익 인식기준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원칙
7장 보험계약대출 평가	보험계약대출 평가 원칙
8장 할인율 가정	할인율 산출 방법
9장 가정의 산출방법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및 관련 내부통제
10장 책임준비금 산출근거 문서화	계리적 가정, 회계정책 등에 대한 문서화 방법

(1) 보험계약 분류

□ (IFRS 17 기준서)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개별계약 단위 기준으로 평가*

* 유의적 보험위험이 존재하거나 유의적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존재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이외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

○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부가급부금 비율*을 통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양적기준은 미제시

* 부가급부금비율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 -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 (감독회계) 현행 세칙 [별표26] '보험계리기준' 내용 중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을 IFRS 17 원칙에 맞게 수정

○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보험위험 유의성 판단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부가급부금 10% 이상으로 규정*

* 평가단위 : 개별계약 단위 (현행 계약집합단위 평가기준은 삭제)

〈 '보험계약 분류' 관련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없더라도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경우 ■ 투자계약 : 그 외 경우
② 계약분류 평가단위	특약을 포함한 개별계약 단위로 평가
③ 계약분류 평가시점	최초 계약 인식시점에 평가
④ 유의적인 보험위험	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부가급부금 산출은 현재가치 현금흐름 기준)

(2)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 (IFRS 17 기준서) 보장위험의 종류 및 관리단위가 유사한 계약집합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 포트폴리오 내 계약을 판매시기 및 수익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보험계약집합을 구성하도록 규정

- (감독회계) 최소한의 포트폴리오 구분 기준*만을 제시하고, 회사가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
 - * (보장위험의 종류) : 사망, 건강, 연금·저축, 상해, 질병, 재물, 일반손보, 자동차 등 유사한 보험위험으로 구분
 - (관리단위) : K-ICS 포트폴리오 구분시 적용되는 사업단위 준용
 - 생명(장기손해) : 유/무배당, 변액, 일반 : 보장위험의 종류 구분과 동일

- 보험계약집합의 구분기준은 IFRS 17 기준서를 원용
- 보험계약집합 구분기준(수익성의 유사성 등)은 문서화하여, 매 회계기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포트폴리오 구분 등’ 관련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포트폴리오 구분	[생명보험] 유배당사망, 무배당사망, 변액사망, 유배당건강, 무배당건강, 변액건강,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변액기타 [장기손해보험] 유배당상해, 무배당상해, 유배당질병, 무배당질병, 유배당재물, 무배당재물,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일반손해보험] 국내(화재, 종합, 해상, 근재, 책임,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기타), 해외 ※ 재보험은 원보험의 ‘유배당’ ‘무배당’ ‘변액’ 구분을 제외하고, ‘복합’ 포트폴리오 추가
② 보험계약집합 구분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으로 구성하되, 발행시점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 보험계약집합에 포함 불가

원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구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유사위험	단일집합	유사위험	단일집합	보장담보	
사망	유배당	상해	유배당	화재	
	무배당		무배당	종합	
	변액	질병	유배당	해상	
건강	유배당		무배당	근재	
	무배당	재물	유배당	책임	
	변액		무배당	상해	
연금/저축	유배당	연금/저축	유배당	기술	
	무배당		무배당	보증	
	변액	자산연계	자산연계	자동차	
	자산연계	기타	유배당	해외	
유배당	무배당		기타		
기타	무배당				
	변액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구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유사위험		유사위험		보장담보	
사망		상해		화재	
건강		질병		종합	
연금/저축		재물		해상	
기타		연금/저축		근재	
복합		기타		책임	
		복합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해외	
				기타	
				복합	

(3) 잔여보장요소 회계모형의 적용

□ (IFRS 17 기준서)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3가지 모형(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변동수수료접근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

○ 일반모형 :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 추정, 현금흐름 변동위험(위험조정),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현행기준으로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부채 측정방법

○ 보험료배분접근법 : 단기보험에 대한 잔여보장부채 측정에 적용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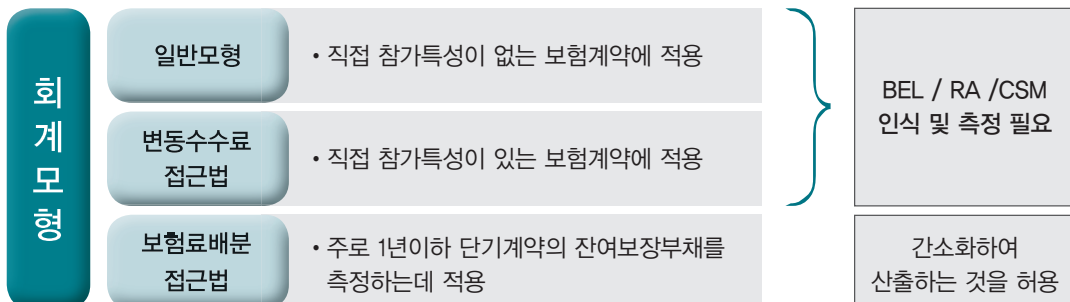
- 집합 내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 또는,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일반모형이나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사용한 것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

○ 변동수수료접근법 : 직접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 기초항목에 근거하여 투자수익을 약정한, 경제적 실질이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계약상 명시, 보험계약자에게 기초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기초 항목의 공정 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



- (감독회계) 원칙적으로 회계모형의 적용은 IFRS 17 내용을 준용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일반모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IFRS 17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단기보험계약에 대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원칙* 제시
- * (예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일반모형 적용을 허용

〈 ‘회계모형 적용’ 관련 주요 개정내용〉

구분	원칙	예외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일반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가능 (조건 : 보장기간 1년 이하 또는 경과기간별 부채 크기가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 ■ 변동수수료접근법 의무 적용 (조건 :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기간 1년 초과 일반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가능 (조건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된 부채와 일반모형으로 측정된 부채의 크기가 모든 경과연도별로 유사한 경우)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배분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모형 적용 가능 (조건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과거 공개협의를 대비 변경내용 - 보험료배분접근법 대상 〉

- '17.10월 공개협의를 대비
 -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원칙 제시
- 현재 방안('21.9월 기준)
 -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모형의 적용을 허용

(4) 위험조정

- (IFRS 17 기준서)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을 대비(감내)하기 위한 금액인 위험조정을 부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위험조정의 측정방법, 측정의 기준이 되는 불확실성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미제시
- (감독회계) 회사 간 위험조정 산출액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위험요인 등을 적시 파악하기 위해 ‘위험조정액의 최저한도’를 제시

〈 ‘위험조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①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위험조정	<p>[잔여보장요소] MAX(㉓, ㉔)를 위험조정금액으로 함</p> <p>㉓ 회사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신뢰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p> <p>㉔ 세척에서 정한 불확실성 요인별 충격수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과 최선추정금액과의 차액</p> <p>[발생사고요소] 회사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75% 이상)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p> <p>[상관관계적용] 잔여보장요소 위험조정 산출시 신지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한 불확실성 요인별 상관관계를 반영</p>
②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	<p>[잔여보장요소] MAX(㉓, ㉔, ㉕)를 위험조정금액으로 함</p> <p>㉓ 회사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신뢰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p> <p>㉔ 세척에서 정한 불확실성 요인별 충격수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선추정금액과의 차액</p> <p>㉕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p> <p>[발생사고요소] MAX(㉓, ㉔)를 위험조정금액으로 함</p> <p>㉓ 회사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신뢰수준(75%이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p> <p>㉔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p> <p>[상관관계적용] 잔여보장요소 위험조정 산출시 신지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한 불확실성 요인별 상관관계를 반영</p>

* (재보험 위험조정) 생명보험 ·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 산출기준 준용

(5) 보험계약마진 수익 인식기준

- (IFRS 17 기준서) 보험계약마진은 경과연도별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보험계약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미제시
 - *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일반 원칙만 제시

- (감독회계) 회사의 자의적인 회계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연도별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을 측정하기 위한 원칙 제시
 - * 계약초기에 보험계약마진을 과다하게 수익으로 인식

- 서비스 제공량 측정시 보험계약의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동시 고려하며, 보장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빈도와 심도를 반영

〈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① 용어정의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 보험계약의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여 정한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서비스 크기 * 보장서비스의 크기는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발생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함
② 수익인식 기준	보험계약마진을 시점별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합 대비 해당시점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 비율만큼 매기간 인식 $\text{보험계약마진수익인식}_t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t}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n = 잔여현금흐름프로젝션기간)

(6) 보험계약대출 평가

- (IFRS 17 기준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보험부채 평가시 계약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IFRS 17 BC114)
 - 구체적인 보험계약대출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부재

- (감독회계) 보험계약대출 평가 관련 기본원칙 제시
 - 회사별, 상품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자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 (세칙 별표35)
 - 보험계약대출 관련 가정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문서화 하도록 규정
 -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의 예정과 실제 차이는 업무보고서로 제출받아, 평가의 적정성 등을 관리해나갈 예정
 - 회사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가산이자율에 한해 비교 대상기준을 제시

〈 ‘보험계약대출’ 관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현금흐름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하고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정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예상현금흐름(이자수익, 신규대출, 대출상환)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를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③ 미래 가산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직전 3년간의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월별평균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월평균가산이자율을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상품별 평가시점 현재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

〈 과거 공개협약의안 대비 변경 내용 - 보험계약대출 평가 〉

□ '18.2월 공개협약의안

-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의 산출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

* 신규대출비율과 중도상환비율이 계약의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 등

□ 현재 방안('21.9월 기준)

- '18.2월 공개협약의안의 경우 관련 가정을 계약 만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현금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회사별, 상품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자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

〈 '보험계약대출 평가' 관련 주요 변경내용〉

	'18.2월 공개협약의안	현재 감독회계 방안
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차감항목	좌동
현금흐름 추정	중도상환액과 신규대출액은 '상품군별 직전 3년간의 해지환급금 대비 비율'을 보험계약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회사별, 상품별 특정에 맞는 현금흐름을 산출하도록 원칙 제시
평가에 대한 통제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험계약대출 관련 예상현금흐름(이자수익, 신규대출, 대출상환)과 실제현금흐름 간 차이를 제출 받음 ■ 계약대출잔액에 대출이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계약대출한도 고려
미래 가산이자율	직전 3년 평균이자율 Min (직전 3년 평균가산이자율, 업계 평균가산이자율)	Min (직전 3년 평균가산이자율, 업계 평균가산이자율, 평가시점 회사 가산이자율)

(7) 가정의 산출방법

□ 현행 [별표26] ‘보험계리기준’ 내용 중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의 가정 산출 방법’을 IFRS 17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이관 반영

〈 ‘가정 산출방법’ 관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안	
가정산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현행추정하여 가정 산출 ■ 사용정보 : 회사의 내·외부 정보를 사용하며, 내부정보를 우선하여 사용 ■ 경험통계기간 :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하고 일관되게 적용 	
산출 가정	① 사업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세부기준 : 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및 투자관리비로 구분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산출
	② 해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 산출 ■ 세부기준 : 계약자웁션, 가입연령, 납입방식, 판매 채널 등 세척에서 제시하는 요소 등을 고려
	③ 위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며,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산출 ■ 세부기준 : 사망담보, 생존담보,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 성별, 직업 등 세척에서 제시하는 세부요소 등을 고려
	④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경험통계와 미래추세를 고려하여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설정 ■ 세부기준 :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 반영 가능
	⑤ 계약자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계약자행동 가정(실효·해약 등 계약자 웁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행동에 기반하여 산출 ■ 세부기준 : 금융시장 상황, 회사 대고객정책 등을 반영하여 산출
	⑥ 경영자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경영자행동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정책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 ■ 세부기준 : 회사가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

3 IFRS 17 도입시 전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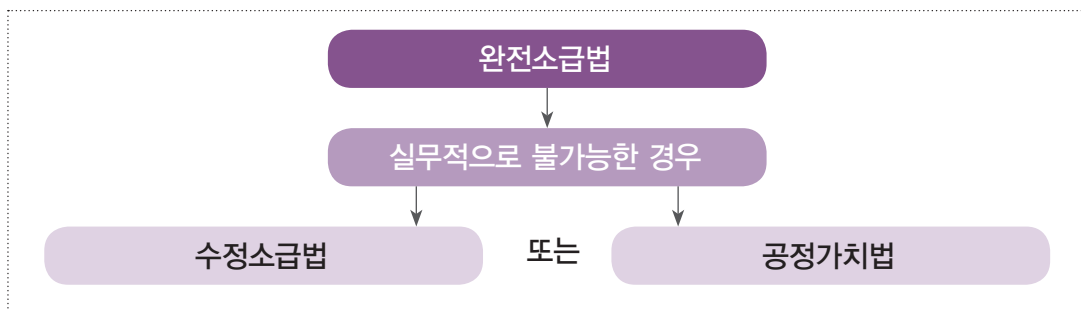
가. 전환일의 보유계약 평가방법 (※세칙 개정사항)

IFRS 17 기준서

IFRS 17에서는 전환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① 완전소급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소급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impracticable) 경우 ② 수정소급법 또는 ③ 공정가치법 중 선택 적용

- ① (완전소급법) 보험계약 판매시점부터 IFRS 17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보유 보험계약 집합을 식별·인식·측정
 - 보험계약집합을 소급하여 평가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 판매 당시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위험조정, 할인율 등 정보가 필요
- ② (수정소급법)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 전환일 기준으로 보험계약집합의 식별이 허용되며 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조정·추산하여 보험부채를 평가
- ③ (공정가치법) 보험계약마진을 IFRS13에 따른 보험부채의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BEL+RA)의 차이(공정가치-이행가치)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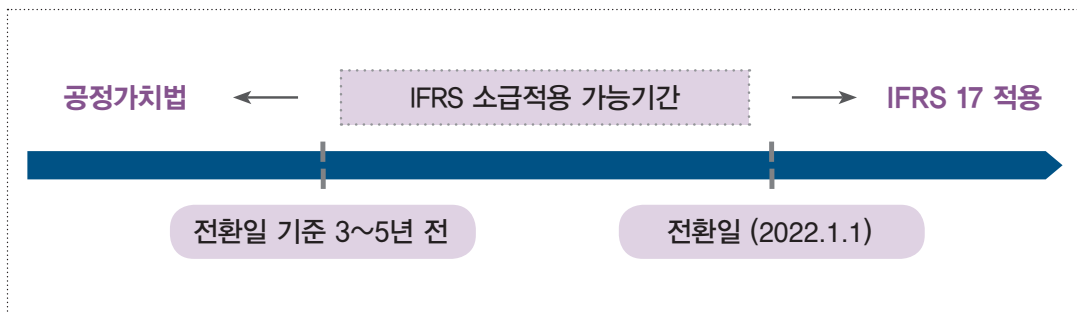
〈 IFRS 17 전환일 보유계약의 보험부채 평가방안 〉



법규 개정안 (IFRS 17)

- 기준서에서는 전환 관련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전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전환방법(소급법, 공정가치법), 소급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 전환일 직전 5년 이내('17~'21년)에 발행된 계약에 소급법(완전 또는 수정)을, 그 이외 기간에 발행된 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최소소급기간 : 3년)
 -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공시기한 : 시행일 3개월 전, '22.9.30)할 경우 전환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

〈 시점별 보험계약 시가 전환방법 〉



〈 'IFRS 17 전환회계' 관련 주요 개정(신설)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① 소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일('22.1.1)로부터 직전 3~5년 중 선택
② 전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기간 내 발행된 계약) 완전 또는 수정소급법 ▪ (소급기간 이전 발행된 계약) 공정가치법
③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경우 전 기간 공정가치법 적용가능

〈 과거 공개협약안 대비 변경내용 - 공정가치법 적용 공시기한 〉

- 회사가 전환일 전 소급적용 가능기간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공시기한
- 공개협약안('19.2월) : 공개협약안('19.2월) : 전환일 기준 3개월 전 → 현재방안('21.9월) : 시행일 기준 3개월 전

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평가 (※세칙개정사항)

IFRS 17 기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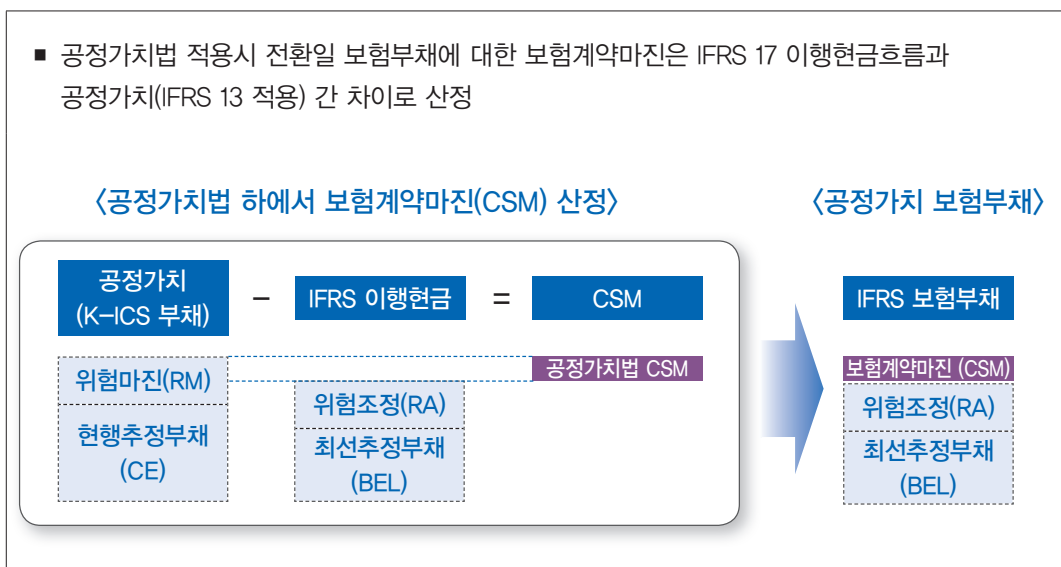
- 보험회사가 보유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시가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보험계약 공정가치를 산출하여야 함
-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과 IFRS13(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차이로 정의

【공정가치의 정의】

(IFRS 13 ‘공정가치 측정’ 문단 9)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

법규 개정안 (IFRS 17)

- 보험부채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 마련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산출된 보험부채’를 기준으로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출



○ IFRS 17에 맞게 보험계약대출 평가방법, 위험마진 측정방법 등을 조정

〈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평가’ 관련 주요 개정(신설)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① 산출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S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 조정
② 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대상) IFRS 17 이행현금흐름 산출대상계약과 일치¹⁾ ■ (보험계약대출) 부채 차감²⁾ ■ (위험마진) 자본비용법 적용³⁾ ■ (할인율) 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가산

1. 대상계약과 계약의 경계를 일치
2. K-ICS에서는 자산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IFRS 17에서는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3. K-ICS에서는 위험마진 측정방법을 신뢰수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비용법 위험마진’이 IFRS 공정가치 개념에 보다 부합

※ 관련 조항

- (세칙) 별표4 조항 신설

〈 과거 공개협의를 대비 변경내용 - 위험마진 측정방법 〉

- 공개협의를 안(*18.2월)
 - 보유 계약의 공정가치를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산출된 보험부채(위험마진 : 자본비용법 측정)’를 토대로 산정
- 현재 방안(*21.9월 기준)
 - ‘18.2월 공개협의를 안 발표 이후 K-ICS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현행 K-ICS(4.0)에서는 위험마진을 신뢰수준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IFRS13에 따른 공정가치 개념 등을 고려하여 전환일의 보유계약 공정가치 산정시 위험마진은 종전 자본비용법을 적용하여 산출

구분	전환일 보유계약 공정가치	K-ICS 위험마진	
		종전 기준(2.0)	현행 기준(4.0)
목적	부채 이전대가	부채 이전대가	현금흐름 불확실성
측정방법	자본비용법	자본비용법	신뢰수준법

4 회사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인 사항

【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

'21.9.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이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건의되었던 내용 중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보험회사 등에 조속히 전파할 예정입니다.

1. 보험료배분접근법 의무적용 여부(손해보험협회 건의사항)

□ (현재방안) 단기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계 국내지점*의 경우 일반모형 적용을 허용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경우

□ (건의내용) 동 의무적용으로 일부 회사에 실무부담(모형혼용에 따른 결산부담)을 야기하고 IFRS의 회계정책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료배분 접근법 의무적용의 폐지를 건의

▶ 단기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의무적용'을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

2. 전환일 시점 소급법 적용가능기간(생명보험협회 건의사항)

□ (현재방안) 소급법 적용대상 기간을 전환일 직전 최소 3년*(최소 '19.1.1부터 소급법 적용), 최대 5년으로 하되,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기한 : 시행일 전 3개월)할 경우 모든 기간에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

* 소급기간으로 1년('21년 소급법 적용), 2년('20,'21년 소급법 적용) 선택은 불가

□ (건의내용) 소급기간으로 1~2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

▶ 최소 소급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전환일 전 5년 이내 기간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경우 1~2년의 소급기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IV

사전공시 내용

1. 사전공시의 개요
2. IFRS 17 사전공시 모범사례
3. IFRS 9 사전공시 모범사례

사전공시 내용

1 사전공시의 개요

- 보험계약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회사는 新 회계기준서 시행에 따른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
- 금감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의무】

재무제표 주석공시 (전자공시시스템)

- 근거 : 외부감사법 (K-IFRS 제1008호)
- ➔ 재무정보이용자에 목적적합 정보제공

경영공시 (보험회사 홈페이지)

- 근거 : 보험업법 제124조 등
- ➔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

① (재무제표 주석 공시)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관련 영향 등을 공시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0.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제정·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31. 문단 30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의 공시를 고려한다.

- (1)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 (2) 회계정책 변경이나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3)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일
- (4)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예정일
- (5) 다음 중 하나의 사항
 - (가)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내용, (나) 그러한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효과에 관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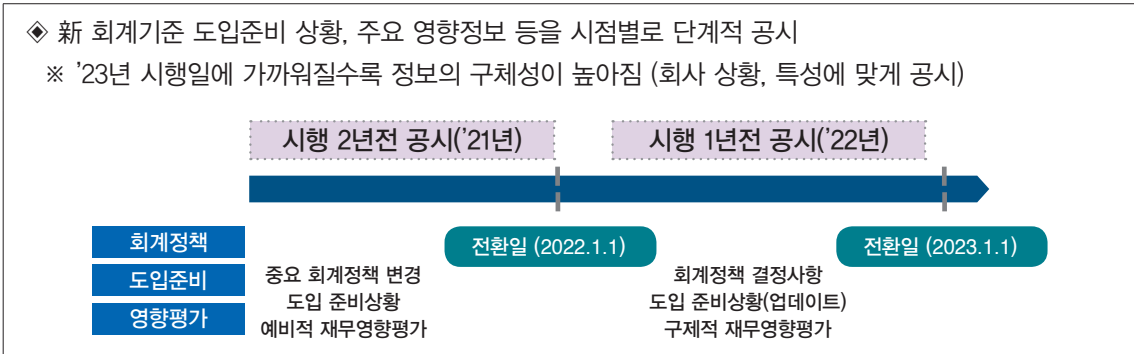
② (경영공시, 홈페이지 공시)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따른 준비상황 및 관련 영향분석 등을 공시 (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4조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 ①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할 의무)

5.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2 IFRS 17 사전공시 모범사례



가. 주요 회계정책 변경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

* 부채측정 : (현행) 원가기준 → (변경) 현행가치, 수익인식 : (현행) 현금주의 → (변경) 발생주의

① ('21년) '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등

*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계정과목 설명

② ('22년)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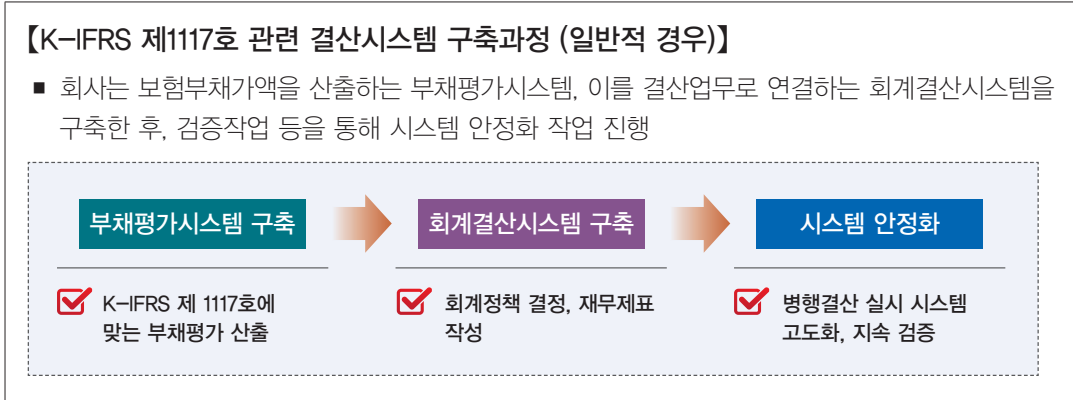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 ('21년)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 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 ▶ ('22년)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 적용시 사용할 보험부채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시 시점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21년	• 과거 정보(판매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원가 측정	• 현재시점(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
'22년	상동	•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예시) 보험부채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등

나. 도입 준비상황

- 新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 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



- ① ('21년)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 ② ('22년) '21년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추가 준비상황 등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 팀을 구성하여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동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시스템 값 산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현재 총 0명의 전담인력)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 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등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다.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

① ('21년)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

②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 회사의 병행결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22년 말 시점에 기재 '22년 말 전에 신뢰성 있는 영향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22년 말 전에도 기재가능

'23년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동시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영향분석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既 발표된 보도자료(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 사례를 활용하세요.”('17.1.3.))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예상되는 재무영향 방향성,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잔액

◇ ◇보험회사가 2021.12.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202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12.31. 현재 총 00백만원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2년) 구체적인 재무수치 증감, 중요 계정과목별 예상수치

◇ ◇보험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00백만원...이며,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00백만원...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2022.12.31. 기준 보험계약부채는 00백만원이며, 동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된 보험계약마진은 00백만원입니다.

K-IFRS 제1104호와 제1117호 간 재무수치 변동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K-IFRS 제1117호(B)	증감(B-A)
자산	XX	XX	XX
부채	XX	XX	XX
자본	XX	XX	XX
...	XX	XX	XX

☞ 그 밖의 주요 회계기준 변경사항별 예시는 p62 「사전공시 모범사례」 참조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1-2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K-IFRS 제1117호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사전공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회사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사는 사전공시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 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 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보험부채 평가방법) 】

▶ (‘21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왔으나,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선택)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 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필요 (완전/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 (‘22년)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실제 적용할 회계정책 등’ 위주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 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 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 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 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

※ 상기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들을 위주로 공시내용 기재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 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회계·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 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중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0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현재 총 0명의 전담인력)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 전담인력 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3. 재무영향평가

K-IFRS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3년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 동시 최초적용 관련 】

- IASB는 보험회사가 IFRS 17보다 IFRS 9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 우려 등이 있어 IFRS 9 적용을 IFRS 17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 재무영향은 제1117호, 제1109호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제1109호 사전공시 : 보도자료('17.1.3.)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참고)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1년에는 K-IFRS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잠재적 영향(예시 : 재무변동의 방향성,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보험부채(자산)가액 등)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보험회사가 2021.12.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12.31. 현재 총 00백만원의 규모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00% (00백만원)입니다.

※ 회사의 상황에 맞게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를 추가 분석, 공시

▶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보험회사가 2022.12.31.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 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¹⁾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²⁾	증감(B-A)
자산총계	XX	자산총계	XX	XX
금융자산	XX	보험계약자산	XX	
재보험자산	XX	재보험계약자산	XX	
....	XX	XX	
부채총계	XX	부채총계	XX	XX
보험계약부채	XX	보험계약부채	XX	
금융부채	XX	재보험계약부채	XX	
....	XX	XX	
자본총계	XX	자본총계	XX	XX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¹⁾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²⁾	증감(B-A)
영업수익	XX	보험수익	XX	
보험료수익	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	
투자수익	XX	XX	
....		XX	
영업비용	XX	보험서비스비용	XX	
보험부채전입액	XX	실제보험금 및 사업비	XX	
지급보험금	XX	XX	
사업비	XX	XX	
신계약비상각액	XX	보험서비스결과	XX	
....	XX	투자손익	XX	
....	XX	투자수익	XX	
		투자비용	XX	
영업수익	XX	영업손익	XX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비용	XX	영업외비용	XX	
당기손익	XX	당기손익	XX	XX
기타포괄손익	XX	기타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XX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K-IFRS 제1104호(A) ¹⁾	K-IFRS 제1117호(B) ²⁾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XX	XX	XX
투자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재무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주 1)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23년 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도입한 회사는 제1104호와 제1109호를 적용한 금액)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동시 적용한 금액

② K-IFRS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기준 직전 5년 이내(2017년~2021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 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5년 전(2016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1.1.기준 K-IFRS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 계약부채는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단위 : 백만원)

전환 방법	대상 연도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자산 ¹⁾	보험계약부채 ¹⁾	보험계약마진 ²⁾
완전소급법	2017~2021년			
공정가치법	2016년 이전			
합계	-			

주 1)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에는 각각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를 포함하고, 모든 구성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합산하여 기재

③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보험회사가 2022.12.31.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부채에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등이 00백만원 반영됨에 따라 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보유중인 고금리계약의 영향 등으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 · 부채의 구성(예상치)〉

(단위 : 백만원)

구분	K-IFRS 제1117호 적용 자산					K-IFRS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 (A+B)	보험계약 자산(A) ¹⁾²⁾	보험계약 마진 ⁴⁾	재보험계약 자산(B) ¹⁾³⁾	보험계약 마진 ⁴⁾	합계 (C+D)	보험계약 부채(C) ¹⁾²⁾	보험계약 마진	재보험계약 자산(D) ¹⁾³⁾	보험계약 마진 ⁴⁾
평가액										

주 1)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3) 보험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4)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구분하여 별도 기재

※ 상기 사례를 참고하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분석 등을 추가하여 공시 가능

3 IFRS 9 사전공시 모범사례

※ ‘주석공시 모범사례’ 2016-1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 기업의 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중요한 회계정책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인 경우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202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6년 9월 13일 IFRS 4를 개정·공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90%를 초과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1 「재무영향분석 미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X년 XX월 XX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¹⁾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²⁾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¹⁾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X년 XX월 XX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〇〇〇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복합상품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 주계약이 채무상품인 경우도 〇〇〇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X년 XX월 XX일 현재 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수익증권 〇〇〇백만원과 복합상품의 주계약인 채무상품 〇〇〇백만원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X년 XX월 XX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〇〇〇백만원이고, 201X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 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 〇〇〇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회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각각 〇〇〇백만원, 〇〇〇백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X년 XX월 XX일 현재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연결회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1X년 XX월 XX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예치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	×××
...				
채무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	×××	×××
채무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
채무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	×××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				
채무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지분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〇〇〇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〇〇〇백만원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〇〇〇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비중이 〇〇%에서 〇〇%로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금융부채 〇〇〇백만원 중 〇〇〇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고, 201X 회계연도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〇〇〇백만원의 공정가치 상승(하락)을 당기손실(이익)로 인식하였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X년 XX월 XX일 현재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X년 XX월 XX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적용할 경우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〇〇〇백만원 중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액은 〇〇〇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¹⁾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²⁾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〇〇〇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〇〇〇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〇〇〇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〇〇〇백만원, 리스채권 〇〇〇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〇〇〇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한 결과 연결회사의 201X년 XX월 XX일 현재 손실충당금 〇〇〇백만원이 〇〇~〇〇%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결회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1X년 XX월 XX일 현재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A)	K-IFRS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B)	증감(B-A)
매출채권	×××	×××	×××
대여금	×××	×××	×××
...			
만기보유 채무상품	×××	×××	×××
매도가능 채무상품	×××	×××	×××
...			
...			
운용리스채권	×××	×××	×××
금융리스채권	×××	×××	×××
합계	×××	×××	×××

1.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현재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 거래는 합계 〇〇〇백만원(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은 예상거래 등 〇〇〇백만원 포함)입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201X 회계연도 중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〇〇〇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〇〇〇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〇〇〇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고 가정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항공유 예상 매입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과 보유 항공유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중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의 소급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X 회계연도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결과, 201X 회계연도 중 관련 위험회피 수단에서 파생상품평가손익 〇〇〇백만원(전체 당기손익의 〇〇%)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예상 매입거래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관리활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기준서 적용 시 당기손익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FAQ



FAQ

IFRS 17 시행 관련



1. 시행일이 '23년임에도, 국내에서 '21.6월에 IFRS 17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117호로 서둘러서 제정 및 공표한 이유는?

- '23년 시행을 위해 보험회사는 '22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회계기준이 확정되어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및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도 확정될 수 있으므로 '21.6월 IFRS 17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조속히 공표 하였음



2. IASB의 결정(23년 시행)과 달리 국내에서 시행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23.1.1.)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3. IFRS 17로 재작성된 2022년 재무제표는 언제 공시되는지?

- IFRS17은 최초 적용시점 직전 기간에 대하여 IFRS17을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이에 보험회사는 2023년 재무제표 작성시 2022년 재무제표를 IFRS17에 따라 재작성하여 표시 및 공시하여야 함

보험감독회계 관련



4. 회계기준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보험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 감독회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이유는?

- 현행 IFRS 4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회계 관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국내의 회계 관행을 별도의 보험감독회계로 규정하여 왔음
- 한편, IFRS 17에서는 동 기준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각국의 회계관행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IFRS 17의 원칙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감독회계를 마련할 예정임



5. 보험감독회계의 현재 진행상황은?

- '21.9.27.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감독회계 관련 법규개정 내용을 큰 틀에서 확정하였음 (동 책자 Ⅲ. 주요 법규 개정방안 참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1.9.27(월),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협회 등

IFRS 17 도입 영향 관련



6.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은?

- 보험회사는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IFRS 17 적용이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고금리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8. IFRS 17 기준서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 그 간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 왔음

*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행가치에 근접시키는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운영 중

-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

IFRS 17 사전공시 관련



9. 일반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IFRS 17 적용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1.8.2.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함
 - * '21.8.2일자 보도자료,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일반투자자 등은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준비상황, 재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10. 보험회사는 IFRS 17 도입에 따른 구체적 재무영향 분석결과는 언제 공시하여야 하는지?

- 재무영향 자료의 신뢰성, 보험회사의 병행결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재무영향 분석결과는 '22년 말 재무제표 등에만 공시할 수 있음
 - * '22년 말 전의 재무제표 등에는 예비적 재무영향 분석결과를 공시
- 그러나, 보험회사가 '22년 말 전이라도 신뢰성 있는 구체적 재무영향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22년 말 전의 재무제표 등에도 구체적 재무영향 분석결과를 공시할 수 있음

보험부채 평가 관련



11. 감독회계에서 보험계약집합의 구분기준으로 '서비스제공기간'을 제시할 예정인지?

- 감독회계에서는 보험계약집합의 구분기준으로 수익성의 유사성 기준, 발행연도별 구분기준만을 제시할 예정이며, 서비스제공기간 기준은 제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IFRS 17의 보험계약집합 구분기준

문단 16.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해당되는 집합(a group of contracts)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2)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3)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문단 22.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문단 16~21에서 기술된 집합을 더 세분한다.



12. 재보험의 포트폴리오의 구분기준은?

- '원수보험의 포트폴리오 구분'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구분에 '유배당', '무배당' 및 '변액' 포트폴리오 구분기준을 제외하고 '복합' 포트폴리오를 추가하여 구성하되,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 가능함



13. 재보험계약에 속한 원수보험계약이 단일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포트폴리오의 구분기준은?

-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주요한 위험(재보험료의 현재가치 합계를 기준으로 해당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중 50% 이상)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며, 주요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복합포트폴리오로 구분함



14. 회계처리의 최소단위를 개별계약(특약 포함)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지?

- IFRS 17에 의하면 보험부채는 모든 보험요소가 포함된 개별계약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감독회계는 ‘보험계약을 개별단위(특약 포함)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할 예정임
- 따라서, 회계처리의 최소단위를 개별계약 보다 세분화할 수 없음



15.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 '21.9.27. 개최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에서는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모형의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후, 손해보험협회는 동 의무적용으로 IFRS 17의 회계정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 이에, 금융당국 등은 향후 개최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에서 ‘동 의무적용의 폐지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16. 감독회계에서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대상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인지?

- 감독회계에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IFRS 17 기준서 내용에 따른 기본 원칙만 제시할 예정이며,
 - 이에, 보험회사는 IFRS 17 기준서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한 후 이후 기간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



17. 감독회계에서 보험계약대출 관련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인지?

- 감독회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관련 기본원칙만 제시할 예정이며, 보험회사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가산이자율에 한해 비교대상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당국은 업무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평가의 적정성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임

전환 회계처리 관련



18. 전환시점에서 소급법 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 최소 소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전환일 전 5년 이내 기간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함이 원칙임
- IFRS 17에서는 다양한 전환회계 선택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회사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감독회계에서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였음



19. 소급법 적용대상 기간을 전환일 전 1년('21년) 또는 전환일 전 2년('20~'21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

- '21.9.27. 개최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소급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전환일 직전 5년 이내 기간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후, 생보협회는 회사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일 전 1년('21년) 또는 전환일 전 2년('20~'21년)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 이에, 금융당국 등은 향후 개최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에서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2년 소급기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20. 전환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기한 : 시행일 3개월 전, '22.9.30)할 경우 전환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음



21. 전환일 시점에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산출된 보험부채'를 기준으로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22. 전환시점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K-ICS)에 의한 보험부채금액'을 평가할 때, 위험마진의 측정방법은?

- 전환계약 공정가치 산정시 위험마진은 자본비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 이는 자본비용법이 신뢰수준법 대비 IFRS13 공정가치 개념(시장 참여자 관점의 부채이전 대가)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임



23. 전환시점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K-ICS)에의한 보험부채금액'을 평가할 때, 위험마진의 산출대상 위험은?

- 대상위험은 보험리스크(대재해리스크 포함),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임



24. 전환일 시점에 공정가치법 적용시 K-IFRS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전환일 시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전환일 시점의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음

부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과거 보험회사 등에 배포된 보험회계 관련 공개협약안이며, '21.9월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별도의 박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현재시점에서의 법규개정 방향(「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결과 중심)을 토대로 변경된 부분이 표시되었으며, 향후 최종 법규개정 내용 등에 따라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 록

1 2017년 10월 공개협약안

I. 제안 이유

- 현행 감독회계는 일반회계(IFRS4) 인정범위내에서 건전성 확보,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
 - 한편 IFRS4는 각국 회계관행을 인정하였으나 IFRS 17*('21년 시행)에서는 각국의 회계관행(감독회계)을 불인정
 - * 보험부채 평가가 원가에서 시가체계로 변경되며 수익인식도 보험료 회수기일기준에서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변경
 - '21년 IFRS 17 도입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감독회계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
- 현재 금감원 및 보험업계 공동 TF 운영* 등을 통하여 IFRS 17 시행 대비 감독회계 관련 법규 개선초안을 마련 중으로
 - *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감독회계회계반) 운영중('17.4월~)
 - 우선 보험계약 분류 등 감독회계 관련 법규 개선초안을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에 제안하고
 - '18년 1분기 중 계약자배당 등 법규 개선초안을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
 - * 향후 소비자대상 영향분석을 실시('18~'19년)한 후 최종안('19년말)을 마련할 예정

※보험감독회계 개선 공개협약안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검토

1단계	2단계
보험계약 분류, 계리적 가정, 계약자지분조정,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 등	계약자배당, 사업비, 위험조정, 특별계정,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서비스마진 측정·상각 등

II. 주요 보험감독회계 개선(안)

1. 보험계약 분류기준

□ (현행) 보험회사의 판매계약(개별 또는 계약집합)을 보험위험이 중요한 계약과 보험위험이 경미한 계약으로 구분하여

○ 중요한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 계약은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만 중요한 보험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

* 부가급부금비율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 -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 (개선안) IFRS 17상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을지라도 보험사고로 중요한* 부가급부금을 지급한다면 보험계약으로 분류

* 개별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보험위험의 중요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양적기준 미제시

○ 감독회계에서는 IFRS 17에 따라 보험계약 분류기준을 정하되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 현행과 동일하게 보험위험의 중요성 판단기준(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유지

【 현행 및 향후의 보험계약 분류기준 비교 】

구분	현행	향후
① 평가단위	개별계약 또는 계약집합	개별계약
② 현금흐름	명목금액	현재가치
③ 보험위험 중요성	부가급부금 10%이상	부가급부금 10%이상

2. 계리적 가정(위험율 · 해지율 · 사업비율 등) 산출기준

□ (현행)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의적 조정의 최소화를 위해 경험통계기간*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위험률 및 해지율은 최근 5년 이상, 사업비율 최근 1년 이상 등

○ 한편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기준에서는 계리적 가정 산출 관련 일반원칙만을 제시

□ (개선안) IFRS 17에서는 계리적 가정의 산출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정 산출시 고려할 원칙만을 제시

○ 이에 계리적 가정과 관련된 통계요건 · 산출방식을 개별 보험회사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가정을 산출토록 유도

○ 다만, 개별 보험회사의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회사간 · 기간간 비교가능성 확보

〈참고〉 감독회계에서의 계약경계 판단기준 제시 여부

▣ (일반회계 측면) 일반목적 재무정보는 투자자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목적

•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외부감사인이 당해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하였다면 목적달성에 충분

▣ (감독회계 측면) 계약경계 판단에 따른 회사별 보험부채 평가결과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 계약경계 판단에 따른 재무적 효과 측정은 난해한 사항이 아니므로 감독회계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하락 제한적

☞ 감독회계(SAP)에서는 계약경계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 미제시

3. 계약자지분조정 처리기준

□ (현행) 생보사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부동산 평가차액 등 미실현 평가손익에 대해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 구분

○ 계약자지분에 대해 부채계정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주주지분은 자본계정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

* 미실현손익을 장래 귀속자별로 구분표시하기 위한 항목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

□ (개선안)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미래 계약자배당 등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

* 계약자지분조정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중 실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실현될 금액을 추정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

○ 현행 계약자지분조정 중 보유자산평가손익에서 미래 계약자배당액을 최선추정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하고

○ 잔여액은 자본계정내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구분표시하여 일반회계 인정범위 내에서 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유지

※ 자산재평가차액을 재원으로 적립된 공익사업출연금은 기타부채,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보험부채에 반영

현행				향후			
부 채	I. 책임준비금			→	I. 책임준비금		
	II. 계약자 지분조정	보유자산 평가손익	미래 계약자배당 잔여금액		보유자산 평가손익	미래 계약자배당	
		자산 재평가차액	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금			자산 재평가차액	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금
	II. 기타부채				II. 기타부채		
자 본	I. 주주 지분	보유자산평가손익		I. 계약자 지분조정	보유자산평가손익 (現계약자지분조정-미래계약자배당)		
					II. 주주지분	보유자산평가손익	

4.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및 재보험자산 손상·평가

가.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 (현행)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중요한 보험위험 전가를 평가

〈 손해·생명보험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평가방법 〉

구 분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방법
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보험자 기대손실 1%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 이전으로 평가 ⇒ IFRS 17과 불일치 보험자 기대손실(ERD) = $-E[\min\{(B-L-P)/B, 0\}]$ B = 재보험료의 현재 가치, L = 재보험금의 현재 가치 P =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현재 가치
생명보험/ 제3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 이전으로 평가 ⇒ IFRS 17과 일치

주 1) 원보험계약은 손해·생명보험을 부가급부금 비율로 보험위험 이전 평가

2)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경우 사고발생확률을 반영하지 않는 부가급부금에 의해 보험위험 전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ERD제도 도입

□ (개선안) IFRS 17에서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중요한 보험위험 이전여부 판단

○ 이에 일반회계 인정범위내에서 마련될 감독회계에서는 재보험계약 관련 위험전가 기준을 폐지하되

○ 위험전가 없는 편법적인 재보험거래를 방지하고자 현행 감독기준을 K-ICS의 자산부채 평가기준으로 이관하여 조정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구분조정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보유기준 현금흐름을 토대로 충격시나리오 방식에 의해 요구자본 산출로 현행 ERD규제 불필요	보유 경과보험료를 대상으로 위험계수방식에 의해 요구자본 산출로 현행 ERD규제 필요

나. 재보험자산 손상·평가

- (현행 재보험자산 손상) 재보험을 받은 수재보험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미충족하거나
 - 투자적격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 (발생손실모형)
- (현행 재보험자산 평가) 보험위험 전가, 재보험회사의 손실발생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재보험을 받은 수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 재보험을 받은 수재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별도의 자산(재보험자산)으로 인식
- (개선안 : 재보험자산 손상) IFRS 17에서는 재보험자산에 대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손상금액 인식
 - 발생손실모형에 근거하여 손상사건 발생시 재보험자산 전액을 손상토록 한 현행 감독법규 폐지(일반회계 원용)
 - ※ 일반회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K-ICS에서는 Sol II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재보험 자산의 구체적인 손상기준 제시
- (개선안 : 재보험자산 평가) 원보험계약 미래현금흐름 측정에 사용된 동일한 가정으로 발생·미발생사고 관련 재보험자산* 인식
 - * 미발생사고 관련 출재 현금흐름(출재보험료, 출재이익수수료, 출재보험금 등) 및 기발생사고에 대한 출재 지급준비금(IBNR 등)으로 구분
 - 다만, IFRS 17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간편법) 적용이 가능한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 현행과 유사하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상응한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식

5.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평가기준

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기준

- (현행) 일반손해보험 등 단기보험계약에 대해서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분에 대하여
 - 일할법, 월할법 등을 통해 미경과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토록 규정

- (개선안) IFRS 17 범위 내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간편법) 적용가능 계약에 대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간편법 적용

*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간편법에 의한 보험부채가 일반모형에 따라 산출한 보험부채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계약

☞ (내용 변경)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경우 등에는 보장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일반모형의 적용을 허용 (P46 참고)

나. 지급준비금 평가기준

- (현행) 발생사고부채인 지급준비금에 대해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 개별·총량추산 비교, 미보고발생손해액, 자동차 표준손해액 및 손해조사비 산출 기준 제시 등 구체적 기준(Rule-based) 규정
- (개선안) IFRS17 기준을 원용하여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 (Principle-based)에 의해 발생사고부채(지급준비금) 산출
 - * 미래현금흐름을 기반하여 기보고 및 미보고발생손해액, 손해조사비,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여 발생 사고부채 산출
 - 다만 원칙중심인 IFRS 17 보완을 위해 발생사고부채(지급준비금) 적립기준을 내규로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토록 하고
 - 현행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 포함)에 대한 선임계리사 검증뿐 아니라,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계리법인을 통한 외부검증 강화

2 2018년 2월 공개협약안

I. 제안 이유

-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감독회계는 일반회계(IFRS4)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확보,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체계(실질적 일원화)로 운영 중이며
 - '21년 새로운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의 시행 이후에도 일반 회계와 감독회계의 실질적 일원화를 유지할 계획
-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와의 공동 TF 운영*을 통해 IFRS17 시행 대비 감독회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 *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감독목적회계반) 운영중('17.4월~)
 - 보험계약 분류 등 1차 논의주제에 대해서는 '17.12월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에 既 부의
- 금번에는 사업비배분, 위험조정 등의 제2차 논의주제에 대해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제안하며
 - '18년 중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19년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보험감독회계 제1차 · 제2차 논의주제 〉

제1차 논의주제	제2차 논의주제
보험계약 분류, 계리적 가정, 계약자지분조정,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 등	사업비배분, 위험조정, 계약서비스마진, 전환시점 회계, 임의배당요소, 특별계정,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배당, 해약환급금 등 계리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중 공개협약안을 발표할 예정

II. 주요 보험감독회계 개선(안)

1. 전환시점 계약서비스마진 측정

- (주요이슈) IFRS17에서는 전환시점 보유계약의 원가법 책임준비금을 시가법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회계적 선택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하락
- 이에 전환시점 보유계약의 평가방식(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적용시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필요

□ (시행방안) 전환시점 보유계약에 대한 평가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소급기간^{*})에 판매된 계약은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고

* '18년 재무영향분석을 통해 '전환시점 이전 3년, 5년, 9년' 중 결정

☞ (내용 변경) 전환일 전 일정기간은 완전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되, 보험회사가 근거를 마련할 경우 모든 기간에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 (P53, P105 참고)

-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동안 판매된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
- 보유계약의 공정가치는 이전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新지급여력제도에서 산출된 보험계약별 책임준비금^{*}을 이전가치로 적용

*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채무불이행위험은 예금자보호 및 감독규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

〈 전환시점 계약서비스마진 산출 기준 〉

구분	적용기준
① 소급방법	• 소급기간 이내 :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 • 소급기간 이전 : 공정가치법
② 소급기간	• 영향분석을 통해 전환시점 이전 3년, 5년, 9년 중 결정
③ 공정가치	• 新지급여력제도의 시가평가 보험부채(최선추정+위험마진)

2. 계약서비스마진 측정 및 상각기준

- (현행) 현행 보험회계에서는 장래 예상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에 포함(안전할증 등)하여 평가하고
 - 예상이익은 실제지급보험금과 위험보험료의 차이, 예정이율과 투자수익률의 차이로 보험기간 동안 실현
- (주요이슈) IFRS17에서는 보험계약 예상이익을 보험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계약서비스마진으로 부채적립 후 위험보장의 제공수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
 -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비스마진 측정단위*, 보험기간 동안의 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기준에 대한 설정 필요
 - * 계약서비스마진 측정시 단일 측정단위에 포함된 계약간에는 예상이익과 예상손실을 상계가능
- (시행방안) 계약서비스마진의 최소 측정단위는 유사한 보험위험*에 노출된 계약을 유배당, 무배당, 자산연계형, 변액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 * 사망, 건강, 연금·저축, 상해, 질병, 재물, 일반손보, 자동차
 - 보험기간 동안 연도별 이익은 총기대 지급보험금 대비 연도별 실제지급보험금 기준으로 인식

- 보험기간 동안 연도별 이익은 총기대 지급보험금 대비 연도별 실제지급 보험금 기준으로 인식

$$\text{계약서비스마진 수익인식}_t = \text{계약서비스마진 총액} \times \frac{\text{지급보험금}_t}{\sum_{t=0}^n \text{기대지급보험금}_t}$$

- ☞ (내용 변경) 보험계약마진을 시점별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합 대비 해당시점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 비율만큼 매기간 인식 (p48 참고)

3. 사업비 배분기준

□ (현행)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상품별·계약별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보험회사의 자의적 사업비 배분을 통한 손익조정을 예방하여 주주·계약자간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조정

○ 현행 책임준비금제도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사업비 배분액은 책임준비금평가에 미반영

□ (주요이슈) IFRS17의 책임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영업보험료식준비금이기 때문에

○ 책임준비금 평가에 반영할 장래사업비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시행방안) 현행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은 회사별 사업비 정책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등 IFRS17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책임준비금 평가에 반영할 장래사업비 추정을 위해 IFRS17 기준과 일관된 사업비 배분기준을 마련

※ 계약자 배당, 상품별 손익분석 등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실제 사업비 배분기준은 존치하되, IFRS17 대비 개선필요성 추가검토

〈 장래사업비 추정을 위한 사업비 배분기준 〉

구분	주요 내용
① 직접·간접사업비 구분	감독기준에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IFRS17 원용
② 사업비 배분단위	판매채널→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보험상품(계약) ⇨ (내용 변경) 보험사별 회계정책 및 보험계약별 사업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 순서 삭제
③ 간접사업비 배분	회사별 자체적인 기준(매기 동일하게 적용)

4. 위험조정

- (현행) 현행 책임준비금 제도는 보험료에 반영된 위험률 등의 계리적 가정을 보험 만기까지 적용하는 원가법체계이므로
 -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및 손익의 변동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생
- (주요이슈) IFRS17에서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이에 대비한 위험조정 적립
 - 이에 위험조정의 측정방법, 측정수준, 계약별 배분방법에 대한 기준정립 필요

□ (시행방안) 위험조정액은 회사별 자체 통계분포의 신뢰수준 75%(VaR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감독기준에서 제시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 값을 최저한도 금액으로 운영

*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신뢰수준 75%에 해당하는 계수

➡ (내용 변경) 회사별 자체 통계분포의 신뢰수준은 자율적으로 산정

- 회사전체 수준에서 산출된 위험조정액은 분산효과 반영 前 계약별 위험조정액을 기준으로 계약별로 배분

〈 위험조정 산출시 적용기준 〉

구분	적용기준
① 측정방법	• 신뢰수준법
② 측정수준	• MAX{ ①, ② } ① 보험회사가 자체적 통계에 75% 신뢰수준으로 산출 ② 감독기준에서 제시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③ 계약별 배분방법	•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전 위험조정액을 기준으로 배분

5. 특별계정

□ (현행) 변액보험, 연금저축 등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계정으로 운용

* 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 변액보험

○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금액에 연동되어 평가되는 등 평가기준이 보험업법 등에 규정

□ (주요이슈)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에 투입된 적립보험료와 특별계정 운용이익의 합계(적립부분)이므로 IFRS17 기준*과 상이

* 위험보험료와 적립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될 현금흐름(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해약환급금 등)의 확률 가중치를 보험부채로 평가

○ 현행 특별계정 책임준비금과 IFRS17 기준 평가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평가차액의 처리방안 필요

□ (시행방안)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은 현행 법규에 따라 특별계정자산의 운영성과 등에 기반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 IFRS17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하도록 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취지 유지

〈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평가 사례 〉

총괄 B/S		특별계정 B/S		일반계정 B/S	
보험부채(100)	-	보험부채(50)	=	보험부채(50)	
최선추정부채(70)		계약자적립금(50)		최선추정부채(20)	
위험조정(10)		N/A		위험조정(10)	
계약서비스마진(20)		N/A		계약서비스마진(20)	
보험계약의 모든 미래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부채측정		현행 법규에 의해 계약자적립금 적립		총괄계정 부채에서 특별계정 부채를 차감·산출	

6. 임의배당요소 측정기준

- (현행) 현행 보험회계에서는 보험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임의배당요소)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 계약자배당*이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유배당 투자계약은 보험 계약 회계처리를 적용
 - * 계약자배당액은 유배당손익의 10%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재량권이 있고, 배당시기도 손익 발생 후 5년 이내에 지급하므로 재량 존재

- (주요이슈) IFRS17 시행에 따른 계약자배당의 임의배당요소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이견 없으나,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이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시행방안) 임의배당요소는 특정 자산·계약집단 등의 운용에 따른 실현·미실현 성과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금액이나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향후 예상수익에 기반하여 결정되므로 임의배당 요소 정의 미충족

〈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임의배당요소 정의 충족여부 〉

구 분	충족여부	주요 근거
① 양적 중요성	충족	회사별로 운용자산이익률 대비 10%~20%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므로 유의성 충족
② 금액 재량	충족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량권 존재
③ 특정 자산 등의 운용성과에 기반	미충족	공시이율이 향후 예상수익에 기반하여 결정되므로 정의 미충족

7. 보험계약대출 평가

- (현행) 금융상품 회계기준(K-IFRS 1039호)의 일반대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하여 자산항목의 대출채권(자산)으로 표시
 - 다만,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부채)의 평가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포함하여 부채항목으로 조정
- (주요이슈) IFRS17에서는 책임준비금 평가시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 미제시
 - 이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보험계약 만기까지의 신규대출 포함여부, 신규대출액 및 중도상환액 등에 대한 추정기준 필요

- (시행방안)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은 관련 보험계약 만기까지의 중도·만기상환액, 이자수취액, 신규대출액으로 구성
 - 중도상환액과 신규대출액은 ‘상품군별 직전 3년간의 해지환급금 대비 비율’을 보험계약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이자율은 회사의 직전 3년평균 이자율과 보험산업의 직전 3년 평균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
 - ☞ (내용 변경) 감독회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평가 관련 기본원칙 제시하며, 이에 회사별, 상품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자율적으로 추정 (p50 참고)

〈 보험계약대출과 일반대출 평가방식 비교 〉

구 분		보험계약대출	일반대출
① 현금흐름	구성	상환액, 이자, 신규대출, 투자비용	상환액, 이자, 부도시회수액
	추정기간	보험계약 만기	일반대출 약정만기
② 신규대출 및 중도상환		직전3년 해지환급금 대비 평균비율	-
③ 이자율 추정		직전 3년 평균이자율	약정이자
④ 부도시회수액		-	경험통계 기반 추정
⑤ 할인율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계약체결시점 이자율

※ 新지급여력제도(K-ICS 1.0)의 보험계약대출 평가기준은 감독회계(SAP)와 동일하나 재무제표 표시기준(新지급여력제도는 자산으로 표시)만 상이

3 2019년 2월 공개협약안

I. 제안 이유

-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감독회계는 일반회계(IFRS 4)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확보,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 달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체계(실질적 일원화)로 운영 중이며
 - '22년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의 시행 이후에도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실질적 일원화를 유지할 계획
-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와의 공동 TF 운영을 통해 IFRS 17 시행 대비 감독 회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세 차례에 걸쳐 보험계약 분류, 사업비배분, 감독재무제표 표시 등에 대하여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17.12월, '18.4월, '18.9월)

〈 보험감독회계 IFRS 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주제 〉

구분	논의주제
제1차 ('17.12.)	보험계약 분류, 계리적 가정, 계약자지분조정,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
제2차 ('18.4.)	사업비배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전환시점 회계, 임의배당요소, 특별계정, 보험계약대출
제3차 ('18.9.)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 운영방안

- 한편, '18.4월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안건 중 전환시점 회계와 관련하여 소급기간 등에 대해서는 재무영향분석을 통해 결정키로 논의
 - 이에 '18년 하반기 실시한 영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환시 소급기간 및 공정 가치법 세부 조정기준 등 감독기준을 제안

II. IFRS 17 시행 대비 전환 감독기준(안)

- (주요내용) IFRS 17에서는 전환시점 보유계약의 원가법 책임준비금을 시가법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회계적 선택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이에 보험감독회계 개선방안으로 소급방법 및 공정가치법 적용기준을 마련('18.4월 도입준비위 보고)하고, 소급기간의 경우 영향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3~9년 중 제시하기로 결정
 - ▶ 소급기간별 자본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급기간 및 공정가치법 세부 조정기준 제시 필요
- (시행방안) 전환일 전 일정기간은 완전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되, 보험회사가 근거를 마련할 경우 모든 기간에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
 - 이때 소급기간은 3~5년 기간 중 보험계약집합별로 선택 가능

- 감독회계에서 '18.1.1일 후 새로운 보험계약집합(최소 소급기간 3년 가정)에 대해 소급법 적용을 하지 않는 보험회사(즉, 최소 소급기간 중 공정가치법 적용)는 기준서 준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근거제시 필요

☞ (시행일 변경) IFRS 17 시행일 1년 연기에 따라 소급가능기간 변경
'18.1.1일 후 → '19.1.1일 후

- 보유계약의 공정가치는 新지급여력제도의 보험부채를 계약의 경계, 투자계약 등을 조정하여 IFRS 17 기준으로 재산출*

* 갱신형 계약의 경계,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계약,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위험마진 등 IFRS 17의 대상계약 및 현금흐름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정

〈 IFRS 17 시행 대비 전환 감독기준(안) 〉

구분	적용기준
① 소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기간 이내 :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 • 소급기간 이전 : 공정가치법
② 소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 기간 중 선택 적용 (최소 '18.1.1.부터 소급하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공정가치법 적용가능) ☞ (시행일 변경) '18.1.1일 후 → '19.1.1일 후
③ 공정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지급여력제도 시가기준 보험부채를 IFRS 17 기준으로 조정



2023년 IFRS 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발행인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편집인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영준

발행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 : 07321)

발행일 2021년 12월